

議會 第73回 臨時會
1998. 11. 11

[11] '97行政事務監查 指摘事項 措置結果 報告

楊 州 郡

順序

□ 기획감사실

- 종합관찰제 운영방법 개선.
- 경영수익사업 추진 재검토
- 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 문화공보실

- 국민관광지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의 차질없는 추진
- 문화재 사업추진시 고증 및 자재관리 철저

□ 민원실

- “군민의 소리 듣기” 전화 운영 내실화
- 신속한 FAX 민원 처리대책 강구
- 개별공시지가 운영제도 개선
- 지적 불부합 토지 처리대책

□ 총무과

- 국가사무 추진 예산전액 국비지원 건의
- 전산적 적정배치 및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강화
-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대책
- 의회 추천 군정유공자 표창 확행
- 새마을 행사시 찬조금 모금 금지
- 새마을지도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재무과

- 부서운영비 집행지침 준수
- 금고계약 방법 개선
- 세입예산 판단 관행 개선
- 의회 추천 군정유공자 표창 확행
-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 지방세 부과·징수 관행 개선

□ 사회복지과

-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선발방법 개선
-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 장애인 관리 대책
- 어린이공원 개발계획 수립 추진
- 노인의 날 행사 추진내용 재검토
- 영·유아 보육시책 추진 개선
- 여성단체 활동방향 개선

□ 환경보호과

- 128 신고전화 설치상황 홍보 및 운영 내실화
- 정화조 실명제 확대실시 및 전산화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실패후 사후관리 대책 강구
- RDF 처리방식의 검증을 통한 쓰레기 처리
-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의 환경오염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강구
- 건축폐기물 처리업소 세륜시설 관리
- 백석 쓰레기 매립장 정화시설 정비
- 실천가능한 환경보전 계획 수립·추진

□ 농림축산과

- 농촌 구조개선 사업 사후관리 개선
- 농지원부 일제 정리
- 한삶회 사후관리대책 강구
- 농지전용허가 민원 반려시 자의적 판단 금지
- 소형관정 폐공방법 개선
- 정주권사업 도로포장폭 확보
- 산불예방 관리체계 보완
- 가로수 관리 강화
- 소 이표장착 및 전산화 추진방법 개선
-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완대책 강구

□ 지역경제과

-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관련 조치
- 마을버스 운행제도 개선
- 시내버스 편법 요금인상 시정
- 물가안정을 위한 업소단속 관행 시정

□ 건설과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방법 개선
- 수로원 수송방법 개선
- 공공사업 협의 불응자 등에 대한 조치
- 오산~연곡간 도로확·포장사업 착수방법 강구
- 건설기계 면허정지 및 취소 사전 안내
-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 명예감독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 도 시 과

- 신천개수 구간내 차집관로 시설방법 전환
- 도시계획도로 등 체불용지 보상대책 강구
- 군사시설보호법 등 지역개발 제한법규 완화
 적극적 추진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 주 택 과

-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제도 재검토

□ 민방위재난관리과

- 민방위 재난관리태세 재정비

□ 보 건 소

- 보건 의료사업 추진 개선

□ 농업기술센터

- 배추 연작피해 예방사업 투자효과 분석
- 지역농업센타 운영방법 개선

□ 문화관광사업소

- 문예회관 시설 보완

□ 상하수도사업소

-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계획 재검토
- 상수도 급수제한 공고 해제

□ 위생환경사업소

- 완벽한 탈취시설 보완

□ 회 천 읍

-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관리
-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 주 내 면

-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관리
-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 은 현 면

-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관리
-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 남 면

-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관리
-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 광 적 면

-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관리
-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 백 석 면

-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관리
-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 장 흥 면

-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관리
-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企 劃 監 查 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종합관찰제 운영방법 개선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관찰제 운영취지는 바람직 하나, 일부 공무원만이 참여, 예산수반 사항의 기피, 관찰사항의 지역처리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기관·단체·주민이 총 참여하고, 관찰내용 처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기동 처리반 운영 등 종합관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 추진하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종합관찰제 운영지침 시달('98.1.17) :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주체 : 전 공무원, 기관·단체 및 일반 주민 • 관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주민 불편사항 -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등 무질서 현장 - 산림·농지 불법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 - 각종 공사장 안전관리 부실사항 - 기타 행정기관의 불합리, 비능률, 낭비초래 등 • 관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신고사항 즉시 처리후 관찰자에게 통보 - 관리대장 작성, 접수·처리상황 기록 관리 - 예산 확보사안 : 추경 확보 또는 기존 사업비에서 집행 ○ 종합관찰 처리제 운영 철저 지시('98.2.25) :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실과소 사업소 직원 공무출장시 또는 출·퇴근시 수시 관찰 통보 ○ 매월 전직원 동참 유도를 위한 각 실과소, 사업소별 실적 공개 ○ 종합관찰 보고서 미제출시 관외출장 통제 ○ 각 읍·면, 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종합관찰 운영실적 보고체계 변경(분기보고→월보) ○ 읍·면별 종합관찰제 운영실적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출된 종합관찰사항의 신속 처리 ○ '99년도 본예산에 1억원 확보 예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경영수익사업 추진 재검토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재원중 일반회계 이자수입 상용액의 전출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같은 조치가 불가하다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통상 년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의 전출시기도 자금운영이 용이하도록 년초에 이행하는 등 시정이 요구되며,○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한 체육공원 조성계획은 매립이 완료됨과 동시에 부지조성 및 활용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시설계획중 가족놀이 퍼팅장이 현재의 주민정서에 맞는지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군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동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하는 조항의 신설 등 동 조례를 정비하여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군청사 관련 사업비 지출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아 지적사항 관련 조항만 개정하려 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98.10.22일 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재정여건상 동 특별회계 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지원이 경제여건 호전시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군청사 신축 사업비 지원후 군유재산 매각 등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양주군 재정에 유리한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당분간 고급리 상품에 예치하고자 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시내버스의 관내 운행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의정부시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서울시측의 행정사항 결정 동향 파악 및 도심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한 시외버스 정류장의 시외곽 이전 조치에 대한 대책, 시내버스 운행시 막차시간 조정 등 군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사전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관련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기 바람. 		
조치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그간의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12. 6 : 노선연장 협조 요청(양주군→대원여객) ○ '96. 1.17 : 노선연장 신청(대원여객→서울시) ○ '96. 1.19 : 의견조회 요청(경기도→양주군·의정부시·버스조합) ○ '96. 1.24 : 검토의견서 제출(양주군→경기도) ○ '96. 9. 5 : 연장운행 건의(양주군의회→건설교통부) ○ '97. 3.13 : 행정협의회 협의 ○ '98. 2.14 : 경기도의 민원처리 불가 회시에 따른 양주군 의견서 작성 경기도에 제출 ○ '98. 5.18 : 노선연장 운행(2개노선 18대) ○ '98.10.17 : 차고지 변경 내인가(회천읍 덕정리 399) → 군수 허가 <p>—</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 시설 확보후 차고지 등록(대원여객 → 양주군) ○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여 불편사항 지속 개선 		

□ 그동안 노선연장을 위해 양주군 의견을 제시한 사항

조

- 서울 시내버스(대원여객)의 노선연장은 기존 평화로의 우회노선에 중점을 두어 평화로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치

- 평화로를 우회하는 노선 지역에는 양주군 회천읍(덕정, 봉양, 율정, 고암, 회암, 옥정리 등)과 주내면(마전, 고읍, 광사, 만송, 삼승리 등)의 약 70%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주민들은 덕정역 및 평화로를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려 할 경우 승용차, 마을버스 또는 도보로 평화로 까지 이동하여 환승하여야 하며, 우회노선을 직접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 1시간 간격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과중한 교통비로 양주군이 서울과 연접해 있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음.

결

- 회천읍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다수의 소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축 사업의 추진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이나 이 지역 또는 평화로변의 지역으로서 교통사각지역의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과

그동안 노선연장 관련 의견을 제시한 내용

경 기 도 검 토 의 견	우 리 군 의 견	비 고
<p>①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구간은 평안운수외 2개업체에서 1일 100여 대가 1~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서울시계까지 이동에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함.</p>	<p>① 우리군에서 추진코자 하는 덕정리 ~서울간 연장운행 계획은 평화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주가 아니라, 별첨도면과 같이 평화로가 아닌 우회도로에 거주하는 농촌지역 주민(회천 6, 주내 5 개 지역 23,000여명 대상)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역의 경우 기존 버스운행 배차간격이 길고(30분~1시간 이상) 의정부까지 가는 버스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직접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의정부와 근거리(15km이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많은 교통불편을 겪어 왔음. • 더욱이 이 지역은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 개발사업(80만m²이상) 및 크고, 작은 아파트 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2~3년이내에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서울까지 노선버스의 연장 등이 절실한 실정임. 	

경기도 검토 의견

우리군 의견

비고

② 대원여객이 덕정리에서 서울 종로 5가 등 중심부로 이동시 지역주민의 교통수혜보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의정부역이나 도봉·수유역에서 전철로 환승 시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로의 진입이 편리해 질 것임.

② 대원여객을 덕정리까지 연장 운행하는 경우 현재 서울에서 의정부 까지 운행되고 있는 902번 버스 대수 및 배차간격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며,

- 의정부에서 덕정까지 운행 횟수만 늘어나게 될 것이나 동 운행 방법이 평화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회도로를 병행, 이용하게 될 것인바, 의정부까지 심하게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경우는 적을 것임.

- 따라서 대원여객이 덕정리까지 연장 운행되더라도 의정부에서 서울 까지 운행되고 있는 내용은 과거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특별히 교통혼잡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며,

- 더욱이 동 지역주민들의 경우 학교 및 직장 등의 사유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 번에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노선버스가 개설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의정부에서 잘 아타야 하는 불편이 많았던 바, 동 노선연장은 당연한 것이며,

• 의정부나 도봉·수유역에서 잘 아탈 경우 많은 시간소비는 물론, 교통비 부담 과종 등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될 것인 바, 노선이 서울까지 연장 운행될 경우 현재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수의 감소로 오히려 평화로 등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③ 덕정~의정부~수유리 구간은 의정부 관할 3개업체의 주력 노선으로 기존업체의 이용승객 감소 유가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현저한 감소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관계로 대원여객 노선 연장 운행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함.

③ 우리군의 고질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평화로를 제외한 전 지역이 평안운수와 명진여객의 단독 노선인 관계로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하고 버스요금이 비싼 관계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많은 실정인 바, 기존 업체들의 운송수입금 감소 등 경영 악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며,

• 더욱이 우리군을 운행하는 노선 버스의 경우 관할 업체가 의정부 시인 관계로 각종 행정지시 및 업무협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文 化 公 報 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국민관광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의 차질없는 추진	소관부서	문화공보실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악산과 기산리가 국민관광지 개발대상지로 확정되어 있으나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시 기산리가 누락된 바, 예산부족이 이유라면 '98 예산 수정안을 통해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조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 7월 2일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어 감악산 지구 및 기산지구가 신규 관광지 개발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97년도 예산이 2개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에는 부족하여 우선적으로 감악산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97년 12월 30일 착수하여 '98년 5월 6일 완료하였으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악산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기존 개발계획은 가용지가 부족하고 2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어 연계 개발이 곤란하므로 연계성 있는 개발을 위하여 당초개발계획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98년 8월 4일 문화관광부에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한 상태임.○ 기산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용역비 8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발주를 준비중에 있으며, '98년 11월중 용역발주하여 '99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문화재 사업 추진시 고증 및 자재관리 철저	소관부서	문화공보실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현복원 현장 확인결과 석재와 목재의 질이 불량하고 진입로, 장판, 도배 등 자재와 형식 등이 전문가의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재검수와 복원 문화재의 고증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복원사업시 복원에 사용되는 자재는 검수 공무원의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이며, 검수 공무원의 전문성이 미흡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자재검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民 願 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군민의 소리듣기” 전화 내실 운영	소관부서	민 원 실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의 소리 듣기”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미흡으로 주민의 이용실적이 저조함. ○ 다양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운영계획 수립 : '98.2.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과 관련한 제안 건의와 15종의 주민신고창구를 통합 운영 • 접수된 “군민의 소리”는 민원서류로 관리하여 담당자가 책임 처리토록 조치 • 민원처리 종료후 주민 만족여부에 대하여 전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신뢰도 제고 ○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080~256~8282(수신자 부담), 844~8282 • FAX : 820~2139 • 우편 : 의정부시 의정부4동 220-66 양주군청 민원실 “군민의 소리” 담당자 앞 ○ 홍보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상회보를 이용한 홍보 : 1회('98.4월) •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 • 행정전화 보류음을 이용한 홍보 		

“군민의 소리” 접수창구 홍보문안

○ 반상회보 및 읍·면정회보

“군민의 소리” 접수창구 운영 안내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군정과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생활 주변의 각종 불편사항 및 불법행위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고자 “군민의 소리”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장소 : 군청 민원실

□ 이용전화

- 전화 844~8282
- FAX : 820~2139
- 우편 : 의정부시 의정부4동 220-66 “군민의 소리”담당자 앞

□ 접수분야

- 행정일반
 - 군정 시책이나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건의 및 제안
 - 민원 불편사항 신고
 - 공직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 생활환경
 -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생활 불편사항
 - 공공시설물의 부적정 관리에 관한 내용
- 불법행위의 신고 및 고발
 - 사이비기자 고발, 불법 유선방송 신고, 불법 비디오 공연장 및 불량도서 신고 (문화공보실 소관)
 - 불법 중개행위 신고(지적과 소관)
 - 환경오염 행위 신고(환경보호과 소관)
 - 소비자 고발, 불량 공산품 신고, 교통불편 신고(지역경제과 소관)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신고(도시과 소관)
 - 부실공사 신고(해당 실과 소관 :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 설사환자 신고(보건소 소관)

○ 유선방송 및 행정전화 보류음을 이용한 홍보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소리” 창구를 이용하고 있으니 군정과 관련한 제안이나 신고할 사항이 있으신 분(전화 844~8282)나 FAX(820~21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신속한 FAX 민원 처리대책 강구	소관부서	민 원 실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radio"/> 민원인들로부터 FAX 민원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이 크다는 여론이 있는 바, 민원사무량, 처리과정, 민원장비 및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민원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FAX 민원의 지연처리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radio"/> 읍·면에서 지적과로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 업무가 이관되어 민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직 1명만 충원되어 건축물대장 정리 및 발급업무 지연 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지적과 행정 FAX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수리로 지연 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의 우선 처리로 인하여 FAX 민원처리 지연 <input checked="" type="radio"/> FAX 전달 처리 직원이 없음으로 인한 지연 처리 <input type="checkbox"/> FAX 민원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radio"/> 노후된 전용 FAX의 교체 <input checked="" type="radio"/> FAX 민원 처리만을 전담하는 인원 배치 <input checked="" type="radio"/> FAX 민원의 접수 및 처리시간을 전표에 기재 <input type="checkbox"/> 개선 전·후의 처리시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radio"/> 개선 전 소요시간 : 1~2시간 소요 <input checked="" type="radio"/> 개선 후 소요시간 : 5~10분 소요 <p style="margin-top: 10px;">※ 조치완료</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개별 공시지가 운영제도 개선	소관부서	민 원 실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는 지적과의 업무인데 과다한 업무량을 읍·면에 부과하여 관련업무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가조사 보조요원 추가확보와 충분한 교육을 통해 본 업무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 표준지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표준지가 산정 및 개별지가 검증에 참여하는 건설교통부 지정 감정사에 대한 이해·설득과 함께 지가 산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법령·제도는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건설교통부에 전의해 주기 바람. 		
조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따른 인원 충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10.17 인사발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인원 3명의 충원으로 인하여 읍·면에서 조사, 산정하던 개별공사지가를 군(郡)에서 조사 산정함. <p><input type="checkbox"/> '98 표준지 가격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2.22 감정평가사에게 인근 토지와 가격차이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표준지 가격의 적정지가 산정 조정 협조의뢰(지적58323~3966) ○ '98.2.3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 개최 : 표준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 ※ 처리종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지적 불부합 토지 처리대책	소관부서	민원실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불부합 토지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토지의 측량과 검사업무를 수행한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지적 불부합지 현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천읍 덕정지역 : 37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2.13 실시한 분할측량 착오 ○ 남면 신산지역 : 29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실시한 도로분할 측량 착오 		
조치결과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bottom: 10px;">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지적삼각보조점 : 약 38점)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분석(인공위성 시스템 활용 : G.P.S) •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 ○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대한지적공사 양주군출장소 • 일시 : 년 4회(분기별 1회) ○ 지적측량 과실자에 대한 행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면 신산지역 측량자에게 17,027천원 변상금 추징 • 지적측량 대행 법인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 경미한 사항 • 중앙지적위원회에 징계 요구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때 • 손해배상 청구 </div>		

總務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국가사무 추진 예산전액 국비지원 건의	소관부서	총 무 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공업 통계와 같은 국가사무중 인건비 등 일부 예산만이 지원되는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관련 예산이 전액 지원되도록 건의하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사무와 관련한 통계업무는 매년 5월경 실시하는 광·공업 통계조사가 있음. ○ 광·공업 통계조사는 국가사무이므로 조사요원 인건비, 조사표 양식 등 모든 경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다만 우리군에서 조사표의 완벽한 검토를 위하여 내검 급식비 약간액('98년 기준 750천원)만을 군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우리군에서 전액 계상하고 있으나 '98년 표본조사의 경우 국가관련 통계항목 3가지가 추가됨에 따라 국내여비, 매식비 등 375천원 정도가 지원(전도)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조사요령서 등은 통계청에서 유인 배부하고 있음. — ○ 광·공업 통계조사 교육시 급양비와 수용비 등도 지원해 줄 것을 광·공업 통계담당 사무관에게 건의 하였음. ○ '99년 예산수립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새로운 비목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답하였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전산직 적정배치 및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강화	소관부서	총 무 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직 공무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전산과 관련이 없는 사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들을 관련부서 또는 관련업무에 종사케 하므로서 이들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하고 ○ 간부 공무원의 전산지식 부족은 행정의 전산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새로운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확대 실시해 주기 바람. 		
조 직 지 체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전산직 공무원 적정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산계 신설방안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반려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향후 주전산기 도입이후 인력보강과 전산계 설치를 통해 해결코자 할 계획이며, ○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전산직에 대하여는 현재 군(郡) 본청에 전산직 정원의 충원상태로 전보 배치가 불가능하나 향후 전산업무 수요 판단 등을 통하여 직렬 조정후 전산업무 관련 부서에 배치되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행정전산화 추진 기반조성에 필요한 종합교육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간부 공무원 전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 '98 간부공무원(5급이상) 전산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원 : 16명 • 교육시간 : 1일(3시간)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우 95 기본사용법 - PC통신, 일반 접속 - 인터넷·경기넷 접속 ○ 종합 행정전산화 추진기반조성에 필요한종합번산 교육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

- 종합전산교육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98.2.28)
 - 교육대상 : 전 공무원(간부공무원 포함)
 - 교육내용 : 원도우즈, OA 과정 및 종합행정 전산화 기본 과정
 - 소요예산 : 35,000천원('99 본예산 확보 추진)
 - 종합전산교육시스템 : 35,000,000원 × 1식 = 35,000천원
 - 추진방법 : 인터넷 및 전자결재시스템 교육을 통하여 간부공무원의 전산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종합행정 전산화 추진기반 조성

치

결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대책	소관부서	총 두 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의 농업직 공무원 등은 동일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기존의 법령에 구속되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농업직의 전직 등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도(道)에 건의하여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청과 읍·면에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현황을 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郡) 본청에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5명으로 6급이상이 24명이고, 7급이하는 1명임. • 읍·면에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34명으로 농업직이 28명, 행정직이 1명, 세무직 1명임. ○ 본 자료에 본 것과 같이 본청에 재직한 공무원은 주로 계장급이나 과장급으로 직위의 특수성을 감안, 읍·면 전보가 불가능 하며, ○ 읍·면에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주로 농업직으로 현재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본청에 농업직렬 정원이 없는 관계로 본청으로의 전입이 불가능하여 순환보직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주군인사규칙 제27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이나 사업소의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하고 읍·면 직원을 우선 발탁하도록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군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동일부서 행정직의 경우 2년, 기술직의 경우 3년이상 장기근속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7급이하의 순환보직은 이행되고 있으며, ○ 또, 농업직의 경우 농업직렬이 본청 정원 관계로 순환보직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전직은 지난 '96년 전직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전원이 탈락하였으며,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96.11.18)으로 농업직 재직경력을 "을" 경력 (8할)을 인정 받았으나 "병"경력(2할)으로 조정되어 인사상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직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의회 추천 군정유공자 표창 확행	소관부서	총 무 과
지적사항	<p>○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공자를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시행하되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지방세 징수율, 징수금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표창의 효용성을 제고</p>		
조치결과	<p>○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직무 유공자로 추천된 공무원은 재무과 지방세무주사 전낙보, 지방기능 10등급 경향숙으로 연말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었으며, '97년 12월 17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의 공적을 확인해 본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무주사 전낙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소비세 증수를 위한 군부대 담배 직송 : 4개소 - '97 지방세 부과 관리 : 44,177백만원 - 1가구 2차량 증가세 : 320건 115백만원 - 과세자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정비의 날 운영 ☞ 골프장 등 중과세 물건 현지조사 • 지방기능 10등급 경향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郡) 금고 지출지급 수납대행점 검사 - 계약 시행 이행여부 및 수납 제세 공과금의 관리상태 점검 - '96, '97년 공공요금 이자수입 목표액 4,899백만원의 17.8% 초과한 5,774백만원의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이 입증되어 '97.12.31일 연말 표창시 군수훈격의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 향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주민과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하여 수훈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 등 표창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새마을 행사시 찬조금 모금 금지	소관부서	총 무 과
지적사항	<p>○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새마을 행사시 찬조금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어 참석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사는 주관부서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범위내에서 검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주기 바람.</p>		
조치결과	<p>○ 새마을운동 양주군지회의 5개 단체에게 각종 새마을 관련 행사시 찬조금을 접수하여 참석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앞으로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에서는 사전에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 범위내에서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고 행사시에 찬조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진홍13240~227 → '98.2.16)</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새마을지도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소관부서	총 무 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점차 지도자에게 봉사자로 변질되어 가고 지도자로서의 적절한 기능과 동기부여도 미흡한 실정임. ○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상응한 교육과 동기부여로 새마을사업이 국민 정신 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자 관리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전체지도자를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음. ○ 교육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98.3.10~3.13 - 장 소 : 각 읍·면 회의실 - 대상인원 : 새마을남·녀 지도자 254명 - 교육내용 : 새마을운동의 기본방향 • 위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98.1월~'98.12월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성남) ☞ 새마을운동남부연수원(장성) - 대상인원 : 70명 		

財務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침 준수	소관부서	재무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집행 지침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직원사기 앙양과 부서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용도로 집행되도록 지침 준수를 강조해 주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운영비 집행 지침을 시달하여 본래의 집행용도대로 사용토록 조치 (재무 43120~464 → '98.2.19)○ 부서운영비의 집행용도 : 직원의 사기앙양과 부서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목적에 사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금고계약 방법 개선	소관부서	재무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계약이 '99년말로 만료되는 바, 금융개방에 대비하고 금고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방법이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98년중 관련 조례의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 '97.1.1 ~ '99.12.31(3년간) • 계약자 :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지부 ○ 투명성을 위한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및 국가계약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군이 유리한 계약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군(郡)금고 지정계약 체결 검토 • 외부의 금융 전문가나 자금관리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평가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결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세입예산 판단 관행 개선	소관부서	재무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전망을 하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이자수입이나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는 당해년도의 행정여건이나 증감요인을 감안하고 지역의 개발수요와 전년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의 세입예산 판단은 최근 3개년간의 세입자료를 기초로 하여 토지거래 허가, 건축 허가, 자동차 등록, 택지분양, 기타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지방세수는 년 20%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예측 불가능한 토지거래 허가, APT 부지매입, 대형 건축물 준공 등의 특수요인 발생시 실제 세수입은 목표치를 상회함. ○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시 지방세의 경우 최근 3개년도의 세목별 추계상황 검토 및 부동산 거래의 동향, 택지개발 및 APT 부지매입으로 인한 개발 수요 등을 사전에 정확히 분석하고, 특수요인 발생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토록 추진 ○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은 전년도 결산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세입요인 대비 세출수요를 종합하여 가급적 계약금고의 고금리 상품에 장기간 예금가입을 추진하여 이자수입 확대 조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의회 추천 군정유공자 표창 확행	소관부서	재무과
지 적 사 항	<p>○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공자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되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 지방세 징수율, 징수금액, 징수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표창의 효용성을 제고해 주기 바람.</p>		
조치 결과	<p><input type="checkbox"/>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추천된 직원표창 현황</p> <p>○ 개인표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훈격 표창('9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과 부과2계장 전낙보 - 재무과 기능10등급 경향숙 • 양주군의회의장 훈격 표창('9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과 지방세무서기보 배정수 <p>○ 기관표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훈격 표창('97.12.31) :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결과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천읍 : 최우수 - 남면 : 우수 - 은현면 : 장려 <p><input type="checkbox"/> 제32회 조세의 날 지방세정 유공자 표창(道(道) 세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창자 : 주내면 재무계장 박기원 ○ 표창훈격 : 경기도지사 ○ 표창일 : '98.3.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소관부서	재무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시 영치사실 통보서상의 행정처분 법적 근거조항 표시가 오기이고,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봉인된 뒷편 번호판을 근거로 재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 체납자의 번호판 분실신고시 관허사업 제한의 방법에 따라 체납세 납부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조치처결과	<p><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 법적 근거조항 오기</p> <p><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 영치사실 통보서상의 법적근거 조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인쇄물도 상기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본 사항의 지적원인은 행정사무감사시 답변 착오로 인하여 기인된 사항임</p> <p><input type="checkbox"/> 체납자 번호판 분실신고시 제한방법 강구</p> <p><input type="checkbox"/> 자동차 번호판 영치당일 회수한 자동차 번호판 목록을 작성하여 읍·면에서 관계기관(민원실 차량등록 담당, 양주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에 통보하도록 조치(해당 읍·면에서 관계기관에 21회 통보)</p> <p><input type="checkbox"/> 민원실(차량등록담당)과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에 상기의 사례를 통보하고 분실신고에 따른 재제작 의뢰자에 대하여는 체납과 관련하여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협조 요청 (재무13410~451 → '98.2.17)</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지방세 부과·징수 관행 개선	소관부서	재무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를 보면, 목표액은 과소 책정하고, 부과 및 징수는 사실대로 하므로서 부과·징수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 있어 상당액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지방세 목표액 산정시 사실대로 하여 전전재정 운영이 가능도록 시정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지방세 목표액은 최근 과년도 3개년의 세수자료를 토대로 당해년도의 토지거래허가, 건축허가, 아파트 부지매입, 택지개발, 자동차 등록현황, 재산세, 종토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액 증감요인 등 세목별 제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증가요인 및 증가추세를 분석하여 목표액을 책정하고 '97년의 경우 최근 개발수요의 급증으로 예측하지 못한 토지거래 허가, APT 부지매입, 대형 건축물 준공 등으로 목표액을 상회하는 부과·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개선방안 지방세 목표액 책정시 과년도의 지방세 신장추이 분석 및 당해연도 토지 거래 허가 현황, 택지개발, 대형 건축물 준공, APT 부지매입 상황 등과 아울러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보유세의 과세 표준액이 증감상황 분석 및 자동차 등록현황 파악, 소득과 소비에 관련된 세목의 경제지표 및 과세대상 변동추이 분석 등 지방세수 증가 특수요인을 일정기간 시차를 두고 분석하여 부과·징수 목표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도록 추진 		

社 會 福 祉 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선발방법 개선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선발시 저소득층이 아닌 농업경영인 자녀도 포함될수 있도록 선발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람.		
조 직 체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주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이며, '98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6명에 장학금 6,900천원을 지급하였음.○ 양주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목적은 양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격려함으로써 학업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인력을 양성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아닌 농업경영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토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관습임. ○ 사후에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 또는 합장코자 하는 경우 과거 매장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야·전 등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과거의 행위가 우리사회의 관습에 의했던 사실임을 감안, 인우보증 등에 의한 사실확인 등 필요한 방법을 고안해 이장·매장 등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건의하기 바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토지에 매장을 한 불법 묘지에 대하여 공원묘지 등 허가받은 묘지로 매장·화장을 하기 위하여 개장할 경우 현행 법령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매·화장 등 신고) 규정 및 장묘업무관리지침에 의거 개장이 가능하며, ○ 이때에는 사망직후 당초의 매·화장 신고 절차에 준하되, 제적등본, 매·화장 신고 자연사유서(그간의 경유)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체나 유골, 연고자와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제도개선을 요하지 않아도 분묘 개장이 가함.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장애인 관리 대책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은 기업체 등이 일정 비율로 장애인의 의무적 고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군(郡)이 솔선 수범하여 이들의 근무가 가능한 부서 및 직종을 선별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 최근 준공된 장애인 복지회관이 공사현장을 확인한 바,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감리자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출입구, 용변기 등 장애인의 활용에 부적합한 구조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부적시설이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 막대한 재원을 투자된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소수 인원이고 수입 또한 소액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업인원 및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체나 지역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을 권유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 2%를 이행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노동부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음. ○ 우리군에서는 매년 1회이상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희망 신청을 받고 있으나 경증 장애인은 이미 각자가 적응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종종 장애인들만 남아 있으므로 그들중 수작업만이라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활자립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고 있음. <p>※ 재활 자립장 고용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98.10월 말 현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업종</th> <th>고용인원</th> <th>1일 생산량</th> <th>1개단가</th> <th>월수입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형광등 안전기 조립</td> <td>11명</td> <td>3,000개</td> <td>40원</td> <td>350천원</td> <td>광적덕도리 (주)삼보전기</td> </tr> </tbody> </table> <p>※ 추가 고용희망자 : 회천 1명</p>	업종	고용인원	1일 생산량	1개단가	월수입액	비고	형광등 안전기 조립	11명	3,000개	40원	350천원	광적덕도리 (주)삼보전기		
업종	고용인원	1일 생산량	1개단가	월수입액	비고										
형광등 안전기 조립	11명	3,000개	40원	350천원	광적덕도리 (주)삼보전기										

조

-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물은 지난 '97.1.20일자로 준공된 건물이며 감리를 맡은 미래건축(대표 : 홍장표)은 일반 감리로써 착공에서 준공까지만이 책임이 있으며 준공시에 미비했던 부분은 감액처리후 준공한 바 있음.
-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자 '98.9.3 재무과에서 대한보증보험(주) 서울 강남지역 본부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하자보수 공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재차 송부하였으며, 보증금이 지급되는 즉시 조속히 하자 보수를 실시하겠음.

치

- 재활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현재는 11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있을 시 참여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지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음.

결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어린이 공원 개발계획 수립 추진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지적사항	○ 도시계획 용도지구중 어린이 공원 시설지구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어린이 놀이터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결과	<p>□ 어린이 공원 시설지구 현황</p> <p>(단위: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면적</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 (11개소)</td> <td>16,700</td> <td></td> </tr> <tr> <td>덕정제1공원</td> <td>1,500</td> <td>• 덕정 151-6번지 일원</td> </tr> <tr> <td>덕정제2공원</td> <td>1,500</td> <td>• 덕정 1231번지 일원</td> </tr> <tr> <td>덕정제3공원</td> <td>1,500</td> <td>• 덕정 235, 240-1번지 일원</td> </tr> <tr> <td>덕정제4공원</td> <td>1,500</td> <td>• 덕정 185-1번지 일원</td> </tr> <tr> <td>덕정제5공원</td> <td>1,500</td> <td>• 덕정 286-9번지 일원</td> </tr> <tr> <td>남면어린이공원</td> <td>1,500</td> <td>• 신산 314번지 일원</td> </tr> <tr> <td>석우어린이공원</td> <td>1,500</td> <td>• 석우 413-1임(5블럭)</td> </tr> <tr> <td>광적어린이공원</td> <td>1,500</td> <td>• 석우 산46-6(37블럭)</td> </tr> <tr> <td>광석어린이공원</td> <td>1,500</td> <td>• 광석 산21-1(17블럭)</td> </tr> <tr> <td>가납공원</td> <td>1,500</td> <td>• 가납 산52-2(25블럭)</td> </tr> <tr> <td>백석어린이공원</td> <td>1,700</td> <td></td> </tr> </tbody> </table>			시설명	면적	비고	계 (11개소)	16,700		덕정제1공원	1,500	• 덕정 151-6번지 일원	덕정제2공원	1,500	• 덕정 1231번지 일원	덕정제3공원	1,500	• 덕정 235, 240-1번지 일원	덕정제4공원	1,500	• 덕정 185-1번지 일원	덕정제5공원	1,500	• 덕정 286-9번지 일원	남면어린이공원	1,500	• 신산 314번지 일원	석우어린이공원	1,500	• 석우 413-1임(5블럭)	광적어린이공원	1,500	• 석우 산46-6(37블럭)	광석어린이공원	1,500	• 광석 산21-1(17블럭)	가납공원	1,500	• 가납 산52-2(25블럭)	백석어린이공원	1,700	
시설명	면적	비고																																								
계 (11개소)	16,700																																									
덕정제1공원	1,500	• 덕정 151-6번지 일원																																								
덕정제2공원	1,500	• 덕정 1231번지 일원																																								
덕정제3공원	1,500	• 덕정 235, 240-1번지 일원																																								
덕정제4공원	1,500	• 덕정 185-1번지 일원																																								
덕정제5공원	1,500	• 덕정 286-9번지 일원																																								
남면어린이공원	1,500	• 신산 314번지 일원																																								
석우어린이공원	1,500	• 석우 413-1임(5블럭)																																								
광적어린이공원	1,500	• 석우 산46-6(37블럭)																																								
광석어린이공원	1,500	• 광석 산21-1(17블럭)																																								
가납공원	1,500	• 가납 산52-2(25블럭)																																								
백석어린이공원	1,700																																									
파	<p>□ 추진계획</p> <p>○ 양주군내 어린이 공원 시설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총 11개소(16,700m²)로 '98년 11월 현재 덕정 4공원(472m² 139,000천원), 덕정 5공원(1,235m² 474,000천원)등 2개소만 군비로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9개소의 토지 매입과 기타 공원조성은 재정확보가 어려워 경제회복시까지는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 어려운 상황임. 차후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노인의 날 행사 추진내용 제검토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도 새로 지정된 노인의 날 행사는 제정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진정으로 노인분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의 행사가 되도록 연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 직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날 제정 목적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혀 무너져가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 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함.○ 예산확보 현황 : 노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 등 1,470천원○ 문제점<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의 예산만 확보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위안잔치 등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움.• '98년도에도 추가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노인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행사가 되지 못하였음.• 차후 예산확보를 하여 초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영·유아 보육시책 추진 개선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시설의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법상 제한규정이 없을시 행정기관이 임의로 시설자격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 ○ 지방보육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립보육시설 관련자와 민간보육시설 관련자 포함하여 보육시책 함께 논의토록 조치 																																																								
조치	<p><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11월 현재 공립보육시설 6개소, 민간 보육시설 22개소, 가정보육시설 4개소, 직장 보육시설 1개소로 총 3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음. ('98.월이후 보육시설 5개소 증가) <p><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활성화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로 늘어가는 맞벌이 부부와 관내 신흥 주거지역의 대단지 조성에 의한 보육시설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읍·면당 보육대상 아동 인구수와 시설 정원의 비율을 바탕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시설 설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신고수리하고자 함.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보육시설 분포 현황('98.11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읍·면</th> <th>대상아동(명) (0세~미취학)</th> <th>보육시설수 (개소)</th> <th>보육정원 (명)</th> <th>비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1,718</td> <td>33</td> <td>1,249</td> <td>11</td> <td></td> </tr> <tr> <td>회천읍</td> <td>4,670</td> <td>10</td> <td>409</td> <td>9</td> <td></td> </tr> <tr> <td>주내면</td> <td>1,303</td> <td>4</td> <td>159</td> <td>12</td> <td></td> </tr> <tr> <td>은현면</td> <td>904</td> <td>3</td> <td>104</td> <td>12</td> <td></td> </tr> <tr> <td>광적면</td> <td>1,320</td> <td>3</td> <td>119</td> <td>9</td> <td></td> </tr> <tr> <td>남면</td> <td>956</td> <td>2</td> <td>66</td> <td>7</td> <td></td> </tr> <tr> <td>백석면</td> <td>1,743</td> <td>10</td> <td>352</td> <td>20</td> <td></td> </tr> <tr> <td>장흥면</td> <td>822</td> <td>1</td> <td>40</td> <td>5</td> <td></td> </tr> </tbody> </table> <p>※ '98.7.1일자로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해 보육시설 설치가 인가에서 신고로 변경되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되어 보육시설의 설치가 증가되리라 봄.</p>			읍·면	대상아동(명) (0세~미취학)	보육시설수 (개소)	보육정원 (명)	비율(%)	비고	계	11,718	33	1,249	11		회천읍	4,670	10	409	9		주내면	1,303	4	159	12		은현면	904	3	104	12		광적면	1,320	3	119	9		남면	956	2	66	7		백석면	1,743	10	352	20		장흥면	822	1	40	5	
읍·면	대상아동(명) (0세~미취학)	보육시설수 (개소)	보육정원 (명)	비율(%)	비고																																																				
계	11,718	33	1,249	11																																																					
회천읍	4,670	10	409	9																																																					
주내면	1,303	4	159	12																																																					
은현면	904	3	104	12																																																					
광적면	1,320	3	119	9																																																					
남면	956	2	66	7																																																					
백석면	1,743	10	352	20																																																					
장흥면	822	1	40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여성단체 활동방향 개선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여성단체 운영은 각 단체의 대표자금 소수 인원만이 참여하여 실적위주의 전시성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단체별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소속 회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사업내용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조 직 지 적 사 항	<p><input type="checkbox"/> 각 단체별 조직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충복가입 또는 비활동 인원 정리 ○ 회원 현황 : 12개 여성단체 5,6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계</th><th>30세미만</th><th>30~39세</th><th>40~49세</th><th>50~59세</th><th>60세이상</th></tr> </thead> <tbody> <tr> <td>5,624명</td><td>785</td><td>1,591</td><td>1,905</td><td>1,245</td><td>98</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계</th><th>중졸이하</th><th>고 졸</th><th>대 졸</th><th>대학원졸</th></tr> </thead> <tbody> <tr> <td>5,624명</td><td>3,299</td><td>2,304</td><td>21</td><td>-</td></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여성복지 시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회원 및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살리기 여성 순회교육 : 4회 760명 • 주부 독후감 공모 : 1회 28편 접수, 우수작 5편 선정 · 시상 • 건전가정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하반기 : 18회 60명 수료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취미(기술)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과목 62회 124시간 146명 수료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5,624명	785	1,591	1,905	1,245	98	계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졸	5,624명	3,299	2,304	21	-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5,624명	785	1,591	1,905	1,245	98																				
계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졸																					
5,624명	3,299	2,304	21	-																					

조
치

- 주부의 날 행사 : 2회 130명 참여
 - 7개 부문 경진대회 및 18명 시상
- 여성 자원봉사대 운영
 - 조 직 : 7개분야 200명
 - 실 적
 - 환경보호 : 49회
 - 민원봉사 : 306회
 - 노인 및 노인시설 지원 : 32회
 -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 43회
 - 소년·소녀 가장 및 아동시설 지원 : 14회
 - 기술·취미 봉사 : 9회
 - 이·미용 봉사 : 9회
 - 기타 : 97회

결

군정시책 참여활동 강화

- 행사 성격상 부득이 단체 임원만이 참석 대상일 경우 일반 회원들에게 전달 교육토록 유도하여 여성복지 사업 전개
 - '98 여성단체 활성화 대회 및 여성 지도자 교육 : 1회 240명
 - 여성단체협의회 개최 : 3회(분기별 1회)
 - 여성복지사업지침 시달회의 개최 : 1회

과

環 境 保 護 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128 환경신문고” 운영 내실화 및 홍보강화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8 환경오염 신고전화의 홍보 미흡 ○ 신고접수후 즉각적인 조치 미흡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8 환경오염 홍보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일보, 동방일보 등 일간지 계재 •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 환경오염신고 처리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당직실용 환경오염 신고대장, 환경오염신고 처리절차 및 비상 연락망 등 비치하여 당직자 신고처리방법 개선 • 환경오염 신고후 신고현장 즉시 출동을 위한 환경단속 전담차량 운영 • 환경오염 신고접수 및 처리·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 • 하천 감시 공익근무요원 상시 초소 근무로 초동 단계에서 환경오염 확산 방지 ○ 128 환경오염 신고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 건수 : 2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 12건 - 수질 : 11건 - 기타 : 6건 • 처리건수 : 2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및 고발 : 11건 - 법령 미저촉 : 15건 - 개인 이해관계 신고 : 2건 - 허위 신고 : 1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정화조 설명제 확대실시 및 전산화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화조 설명제는 최근의 허가건물 등을 시행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관리도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정화조 관리업무를 개선해 추진하기 바람. 		
조 직 과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설명제는 최근의 허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건축허가(1978년)를 득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 재래식을 제외한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여부 등을 위하여 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96.6월~'97.4월까지 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산화 입력자료 조사 및 대장 카드제작, 전산입력후 금년 1월에 1차로 정화조 설명제 관리표찰 1,000매를 제작하여 우선적으로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오수정화시설 설치업소와 일부 주택에 대하여 관리표찰을 배포하였으며, 본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정착을 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보완 추진 할 계획임. ○ 아울러 관리표찰을 부착하지 못한 업소 및 가정에 대하여도 청소예고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업소 및 주택에 추가로 제작, 배포하여 설명을 통한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적기에청소 등 효율적인 관리로 하천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실패후 사후관리대책 강구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삶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음에도 불법시설이 잔존하고, 쓰레기가 반입되어 처리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으니 현장 확인하여 사후관리에 엄정을 기하기 바람. 		
조 직 내 용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일반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재)한삶회 재활용사업회 ○ 시설규모 : 12톤/일(퇴비화 10톤, 사료화 2톤) ○ 투자비 : 560백만원(민자) ○ 운영기간 : '94년초~'97년까지 <p><input type="checkbox"/> 조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12.27 :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고발 및 원상회복 ○ '97. 3.10 : 불법 건축물 고발 ○ '97. 6월 :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36,165,000원) ○ '97. 9. 6 : 서울시 7개 구청 음식물 쓰레기 반입 중지 ○ '97.10월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고발 ○ '97.10월이후 :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보관중인 퇴비의 조속한 처리를 지시 <p><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중인 퇴비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R · D · F 처리방식의 검증을 통한 쓰레기 처리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천읍에 설치한 R · D · F 쓰레기 처리공법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공식적인 검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다양한 분석과 검증을 실시해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조 직 자 적 성 과	<p><input type="checkbox"/> 일반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 (주)대학환경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사료 원료 생산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 원료 생산 ○ 처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생활폐기물 : 200톤/일 • 음식물 쓰레기 : 100톤/일 ○ 위치 : 양주군 회천읍 율정리 산2-1 ○ 사업비 : 70억원 <p><input type="checkbox"/> 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97.5.17) ○ 산림훼손(부지조성 완료) ○ 건축허가('97.5.19) ○ 착공('97.5.30) ○ 폐기물처리업 허가('97.8.18 내인가) ○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97.12월) <p><input type="checkbox"/>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없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취소한 후, 사업을 재개할 경우 재검토할 계획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의 환경오염 실태파악 및 예방 대책 강구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대량의 분쇄물을 노지에 야적함으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야적 및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사하여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함. 																																																	
조치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업체수 : 8개업소 ○ 처리시설명 : 과쇄시설 ○ '97년 처리실적 : 808,211톤/년 	(단위:톤)																																																
조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업체명</th> <th>대표자</th> <th>소재지</th> <th>시설명</th> <th>처리능력</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주)경기환경</td> <td>김조웅</td> <td>은현 봉암리 20-1</td> <td>과쇄시설</td> <td>100</td> <td>14,263</td> </tr> <tr> <td>광명산업(주)</td> <td>박명섭</td> <td>회천 고암리 433</td> <td>"</td> <td>150</td> <td>136,441</td> </tr> <tr> <td>(주)동국산업개발</td> <td>홍홍표</td> <td>회천 율정리 491-3</td> <td>"</td> <td>150</td> <td>168,209</td> </tr> <tr> <td>(주)금정환경</td> <td>박현</td> <td>백석 오산리 704-8</td> <td>"</td> <td>150</td> <td>99,245</td> </tr> <tr> <td>삼진환경(주)</td> <td>남수현</td> <td>은현 용암리 664-2</td> <td>"</td> <td>250</td> <td>327,173</td> </tr> <tr> <td>자원산업(주)</td> <td>박성호</td> <td>은현 용암리 239-1</td> <td>"</td> <td>150</td> <td>45,594</td> </tr> <tr> <td>남광환경개발</td> <td>남상훈</td> <td>은현 하패리 358</td> <td>"</td> <td>150</td> <td>17,286</td> </tr> </tbody> </table>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명	처리능력	비고	(주)경기환경	김조웅	은현 봉암리 20-1	과쇄시설	100	14,263	광명산업(주)	박명섭	회천 고암리 433	"	150	136,441	(주)동국산업개발	홍홍표	회천 율정리 491-3	"	150	168,209	(주)금정환경	박현	백석 오산리 704-8	"	150	99,245	삼진환경(주)	남수현	은현 용암리 664-2	"	250	327,173	자원산업(주)	박성호	은현 용암리 239-1	"	150	45,594	남광환경개발	남상훈	은현 하패리 358	"	150	17,286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명	처리능력	비고																																													
(주)경기환경	김조웅	은현 봉암리 20-1	과쇄시설	100	14,263																																													
광명산업(주)	박명섭	회천 고암리 433	"	150	136,441																																													
(주)동국산업개발	홍홍표	회천 율정리 491-3	"	150	168,209																																													
(주)금정환경	박현	백석 오산리 704-8	"	150	99,245																																													
삼진환경(주)	남수현	은현 용암리 664-2	"	250	327,173																																													
자원산업(주)	박성호	은현 용암리 239-1	"	150	45,594																																													
남광환경개발	남상훈	은현 하패리 358	"	150	17,286																																													
결과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향후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훈령 제318호('96.2.9)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실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관련 업체 점검결과 불법사항 발견시는 강력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실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건축폐기물 처리업소 세륜시설 관리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서 세륜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오염원이(흙먼지 등) 다량 배출되고 있음으로 단속이 필요 		
조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98년중 추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회(상·하반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상반기 점검시 1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분 의뢰 및 행정 처분하였음. ○ 자원산업개발(주)(‘98.3.27 적발) : 측면 세륜시설 미설치로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 의뢰 및 조치 명령 <p><input type="checkbox"/> '98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11월중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어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비산먼지)의 피해를 극소화 하고자 함. ○ 아울러 지도·점검시 비산먼지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운반차량에 대한 세륜, 세차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엄중 행정조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백석 쓰레기 매립장 정화시설 정비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차집관로 시설도 장기간 후에나 완비될 전망이므로 우선 매립장의 정화 시설을 정비하여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리 매립장 현황(사용종료 매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 32,677m² • 총매립량 : 62,500m³ • 매립기간 : '93년부터 '97년 6월까지 ○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 삼단 정화조 시설 • 처리방법 : 자연유화식 처리방법 • 규모 : 78.68m³/일 ○ 정화조에 저장된 침출수는 '99년도 상반기에 탱크로리(버륨로리) 구입 즉시 기계약된 사항에 의하여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송 처리할 계획임. <p style="margin-top: 10px;">※ 침출수 운송차량 구입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종 : 버륨로리 차량 • 규격(용량) : 8kℓ • 구입가격 : 70,000천원 • 구입시기 : '99년 상반기('99년 본예산에 편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실천가능한 환경보전 계획수립·추진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업무계획 및 년말 업무실적을 비교해 보면 음식점 유형별 급식방법 모형보급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계획 및 사업장 점검 등 실제 추진하지 않는 시책을 <u>형식적으로</u> 보고하고 있는 바, 실제 추진가능한 시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여 주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는 업무계획 수립시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제 추진하지 못할 계획을 <u>형식적으로</u> 수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계획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한 감량의무 사업장의 관리 및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조례개정(10월중 공포 예정) •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리 수거용기 보급 및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수거체계의 확립(월 500원의 수거비용을 1,000원으로 인상) •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중간 처리업자와 연계 처리를 위하여 처리계약 체결 준비중(공동주택관리소와 직접 계약 체결) •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99년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함과 더불어 별도용기를 자체 구입토록 하여 공동주택과 같이 수거를 실시할 예정임. 		

農 林 畜 產 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농촌 구조개선사업 사후관리 개선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보관창고도 일부 지역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 또는 용도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바,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시정대책을 강구하시고 동 시책의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람. 		
조치	<p><input type="checkbox"/>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일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98.11.2~11.7 ○ 대상 : '92년~'97년 정부지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 점검자 : 농정담당외 2인 ○ 향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보관창고의 타용도 및 개인사용을 방지하고 농기계의 적정 보관으로 사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하여 년간 2회(상·하반기) 군, 읍·면 합동으로 점검하고,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 명령 • 기한내 시정치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고발조치 		
결과	<p><input type="checkbox"/> 시책의 계속 추진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농촌 구조개선사업 사후관리 개선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개량물꼬 지원사업도 경지정리지구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실효성이 적어 예산낭비의 요인이라는 여론이 있는 바, 지원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단 또는 축소를 건의하는 등 농촌현실에 맞게 농촌시책을 추진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개량물꼬 공급실적 : '97년 7,720개 → '98년 2,400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97 실 적</th> <th>'98 실 적</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7,720</td> <td>5,320</td> <td>2,400</td> </tr> <tr> <td>회천읍</td> <td>1,175</td> <td>920</td> <td>255</td> </tr> <tr> <td>주내면</td> <td>1,327</td> <td>910</td> <td>417</td> </tr> <tr> <td>은현면</td> <td>919</td> <td>660</td> <td>259</td> </tr> <tr> <td>남면</td> <td>1,299</td> <td>850</td> <td>449</td> </tr> <tr> <td>광적면</td> <td>1,323</td> <td>890</td> <td>433</td> </tr> <tr> <td>백석면</td> <td>1,101</td> <td>740</td> <td>361</td> </tr> <tr> <td>장흥면</td> <td>576</td> <td>350</td> <td>226</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량물꼬 사후관리 계획에 의거 개량물꼬 공급 및 설치대장 비치 관리중 <p><input type="checkbox"/> '99 개량물꼬 공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없음. 			구 분	계	'97 실 적	'98 실 적	계	7,720	5,320	2,400	회천읍	1,175	920	255	주내면	1,327	910	417	은현면	919	660	259	남면	1,299	850	449	광적면	1,323	890	433	백석면	1,101	740	361	장흥면	576	350	226
구 분	계	'97 실 적	'98 실 적																																				
계	7,720	5,320	2,400																																				
회천읍	1,175	920	255																																				
주내면	1,327	910	417																																				
은현면	919	660	259																																				
남면	1,299	850	449																																				
광적면	1,323	890	433																																				
백석면	1,101	740	361																																				
장흥면	576	350	22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농촌 구조개선사업 사후관리 개선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내 농산물 집하장 관리실태를 확인한 바, 영농조합법인 구성 이전부터 외지인 참여자수가 늘고 있고 집하장 시설과 2대의 수송차량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과 인접한 우리지역에 집하시설이 필요한지와 영농현장에서 직접 포장·출하되는 현지사정을 감안할 때 집하시설 존치의 필요성과 지원금 회수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개선하기 바람. 		
조치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농산물 간이집하장 ○ 사업년도 : 1995년 ○ 조직명 : 주내마전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위치 : 주내면 마전리 264-3 ○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 1,319m²(400평) • 건물 : 695.01m²(210평, B형) ○ 사업비 : 162,394천원 (국비 64,958, 도비 59,638, 융자 5,300, 자담 32,498) ○ 사용농가 : 30호(1호 사망) ○ 영농규모 : 32ha ○ 집하장 시설은 연 500톤이상 활용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 사용농가가 대부분 대농가로 수집된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수송차량이 필요함. ○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나 영농 현장에서 직접 포장·출하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간이집하장 기능은 물론, 공판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농지원부 일제 정리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 관리실태를 보면 부재자, 사망자 등은 등재된채 방치되고 실제 농민이 누락되는 등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실정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을 정하여 농지원부상의 현실 불부합 사항을 일제 정리함으로서 엄정한 농정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수립 시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1.25(산업51311~4703) ○ '98. 1. 5(산업51311~17) <input type="checkbox"/> 추진실적 		(단위:매수)																											
결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right;"> <thead> <tr> <th>구 분</th><th>계</th><th>회천</th><th>주내</th><th>온현</th><th>남</th><th>광적</th><th>백석</th><th>장흥</th></tr> </thead> <tbody> <tr> <td>재정비대상</td><td>9,917</td><td>2,445</td><td>1,705</td><td>1,376</td><td>1,311</td><td>907</td><td>1,209</td><td>964</td></tr> <tr> <td>재정비실적</td><td>8,135</td><td>1,035</td><td>914</td><td>1,004</td><td>865</td><td>896</td><td>1,065</td><td>651 2,356</td></tr> </tbody> </table>	구 분	계	회천	주내	온현	남	광적	백석	장흥	재정비대상	9,917	2,445	1,705	1,376	1,311	907	1,209	964	재정비실적	8,135	1,035	914	1,004	865	896	1,065	651 2,356		
구 분	계	회천	주내	온현	남	광적	백석	장흥																						
재정비대상	9,917	2,445	1,705	1,376	1,311	907	1,209	964																						
재정비실적	8,135	1,035	914	1,004	865	896	1,065	651 2,356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한삶회 사후관리 대책 강구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간 동안 한삶회 영농조합 법인에 거액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부실로 부도가 났음에도 보조금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조합의 대표는 물론 책임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농업보조시 사전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사업명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원료구입 자금<input type="checkbox"/> 조직명 : 한삶회영농조합법인<input type="checkbox"/> 사업비 : 1,670,000천원(국 345,000, 도 50,000, 융 1,004,000, 자 271,000)<input type="checkbox"/> 회수조치 금액 : 218,89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금 : 57,890천원○ 미회수금 : 161,000천원<input type="checkbox"/> 사후조치<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97.11.19 의정부경찰서장)○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8필지 1,758평, 건물 3건 644평 압류 등기('97.1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완료<input type="checkbox"/> 대책<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자가 개인이 아닌 한삶회 영농조합 법인으로 법인재산외 조합원을 대상으로 채권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동 법인은 가공공장을 정상 가동시키고 있으며, 보조금을 조속한 시일내 반납코자 노력하고 있음.○ 차후 농업보조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농지 전용허가 민원반려시 자의적 판단 금지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 전용허가 신청시 반려사유를 보면 집단농지 피해 우려, 인근농지 잠식우려,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 있음. 전용목적의 실현성 없음. 등과 같이 전체 농지나 민원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표현함으로서 민원인들로부터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불합리적인 사유로 반려되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부득이 반려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시정·보완해 주기 바람.		
조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를 타목적으로 전용 사용코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심사 확인기준에 의거 농지관리 위원과 군수의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동법 규정에 의한 심사 기준은<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법 제39조 규정(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대상)에 위배되는지 여부②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③ 전용목적 사업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④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⑤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되어 있음.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심사규정 적용 반려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반려되었다는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제시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소형관정 폐공방법 개선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관정의 폐공방법이 허술하여 지표수 오염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대형관정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게 폐공 처리하여 이로인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폐공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교통부에서 작성된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서”에 근거(p.253)○ 소형관정 폐공 처리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적층 관정의 정의 : 암반층까지 굴착하지 아니하고 암반층 상부의 모래, 자갈, 실트 등 충적층 구간까지만 굴착한 우물• 폐공 처리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이싱을 인발하여 공 내부가 자연적으로 함몰되게 한다.- 공 내부가 함몰되지 않으면 주변 토양으로 되메움 한다.<input type="checkbox"/> 추진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공처리 공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97.11.10~12.10• 대형관정 : 30공• 소형관정 : 25공○ 폐관정 폐공 처리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관정 : 외부 대형 파이프를 일정 깊이로 절단후 시멘트 슬러리 주입후 봉인• 소형관정 : 소형 파이프(4~5cm)로된 관정으로 소형 파이프를 인발후 자연토사로 함몰후 봉인<input type="checkbox"/> 향후 추진계획<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폐공 조사를 하여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폐공 처리할 계획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정주권 사업 도로 포장폭 확보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주권 사업 등으로 시행되는 도로 확·포장 공사의 도로폭은 최소한 4m, 가능하다면 5m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도로 확·포장의 실효성을 볼수 있게 추진하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사항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 선정시 토지주로부터 도로폭 4m 이상 동의를 받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대상 선정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로폭 4m 이상 충분히 확보하여 시공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산불예방 관리체계 보완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 감시원 순시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산자에 대한 통제 및 계도활동 강화 ○ 군수 홍보서한문의 배부 확대 ○ 무전기를 사용치 않는 하절기에는 수방단의 재난관리에 활용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유급 산불감시원 50명을 고용취약지에 배치하고 있으며, 주내면 불곡산의 5개산 408필지 2,764ha에 대한 입산통제 구역 고시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고시 하였으며, ○ 산불감시시설 14개동과 화기물 임시 보관소 2개 동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1개동의 산불 감시초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음. ○ 산불예방 군수서한문(1,500매)의 발송은 리장·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 의용소방대·공원묘지·사찰·기도원·교회 등 일반 주민들에게도 널리 발송하여 산불예방 홍보를 철저히 하였음. ○ 현재 보유중인 휴대용 무전기는 82대로서 봄·가을철 산불방지 기간과 하절기 산지 오염예방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나 장마철 수방단의 재난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무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조치하였음. 		
과 정 과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가로수 관리 강화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신설되는 도로는 가로수 식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으로 기개설 구간에 대한 식재계획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기존 노선의 사고목에 대한 보식도 함께 추진해 주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신설 또는 건설중인 도로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군</th><th style="width: 20%;">길 이 (km)</th><th style="width: 20%;">준 공</th><th style="width: 30%;">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주내검문소~광적면 구간</td><td>7.2</td><td>기 준공</td><td></td></tr> <tr> <td>남면 신암~용암 구간</td><td>13.0</td><td>2001 예정</td><td></td></tr> <tr> <td>장흥 일영~삼하 구간</td><td>5.0</td><td>2000 예정</td><td></td></tr> <tr> <td>장흥 송추~교현 구간</td><td>2.7</td><td>1998 예정</td><td></td></tr> <tr> <td>주내 마전~복지 구간</td><td>4.3</td><td>1998 예정</td><td></td></tr> </tbody> </table>	구 군	길 이 (km)	준 공	비 고	주내검문소~광적면 구간	7.2	기 준공		남면 신암~용암 구간	13.0	2001 예정		장흥 일영~삼하 구간	5.0	2000 예정		장흥 송추~교현 구간	2.7	1998 예정		주내 마전~복지 구간	4.3	1998 예정			
구 군	길 이 (km)	준 공	비 고																								
주내검문소~광적면 구간	7.2	기 준공																									
남면 신암~용암 구간	13.0	2001 예정																									
장흥 일영~삼하 구간	5.0	2000 예정																									
장흥 송추~교현 구간	2.7	1998 예정																									
주내 마전~복지 구간	4.3	1998 예정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 신설 또는 건설중인 도로는 5개 노선이며, 이중 기 준공된 1개 노선과 '98년 준공예정인 2개 노선이 있으나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으로 '99년도에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목의 보식과 함께 추진하겠으며, ○ 기존 노선의 가로수 관리(4,160본)는 금년도 예산액 6,160천원 범위내에서 가지전정 및 맹아제거, 사고목 처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소 이표장착 및 전산화 추진방법 개선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전산화 사업 추진에 있어 바코드 이표 장착후 매매, 폐사, 도축 등으로 인한 증감 동향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농가에 통보하여 사육조절이 가능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 실행하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95년 10월부터 추진중인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이 소산업 정보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업무가 조정되어 시·군에서 지역 축협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본 군에서는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업무가 인계 되었음.○ 현재 우리군에서는 한우 개량단지 사업,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특수가축 공제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완대책 강구	소관부서	농림축산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권장되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정부로부터 인가된 업체가 시공하고 환경보호과의 준공검사까지 받는 시설의 배출수가 사후 환경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기존시설의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농가(286개소) 실태조사 : '98년 상반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뇨 처리시설별 운영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관리실태 미흡한 농가 시정 지시 • 농가관리를 카드화 하여 지속적 지도 · 관리 ○ 축산시설의 신 · 증설은 발생분뇨의 전량을 자원화 하도록 유도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축산분뇨 처리사업 완료농가 지도 · 점검 : '98.3.4~3.6(23개소) ○ '98 축산분뇨 처리사업 대상자 교육 : '98.2.13 ○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농가 사후관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98.3.16~3.31(12일간) • 조사대상 : 286개소('97년 22, '96년 82, '95년 100, '94년대비 82) ○ '98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현황 점검 : '98.6.24~6.25(23개소) ○ 우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지 견학 : '98.3.30, '98.6.17 		

地 域 經 濟 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관련 조치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버스의 종로5가 경유 방안 검토 ○ 서울시내버스의 지역 교통수단과 연계성 방안 강구 		
조 직 치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12. 6 : 노선연장 협조요청(양주군 → 대원여객) ○ '95.12.12 : 중재 요청(양주군 → 경기도) ○ '96. 1.24 : 검토 의견 제출(양주군 → 경기도) ○ '96. 9. 5 : 연장운행 건의(군의회 → 건설교통부) ○ '97. 3.13 : 행정협의회 부의 ○ '97.12월 : 집단민원(진정) 제출(이홍규외 469명 → 건설교통부) ○ '98. 2.14 : 경기도에 집단민원 처리불가 내용 반박 의견 제출 ○ '98. 3. 5 : 의정부시 관련부서에 우리군 의견(반박·추가의견) 제출 ○ '98. 3월 : 군의회(이홍규 의원)와 합동으로 건교부 방문 ○ '98. 3.20 : 재결심의(예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5.18 : 대원여객(902번) 종로5가 ↔ 덕정역간 운행 개통(16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5가 → 의정부 → 고읍리 → 덕정리 : 10대(60회) • 종로5가 → 의정부 → 덕계리 → 덕정리 : 6대(36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마을버스 운행제도 개선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버스 손실 보상금의 예산확보 지원 추진 ○ 마을버스의 통합 및 운수회사 설립방안 강구 		
조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공영버스 손실지원금(27,000천원) 확보 ○ '98년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마을버스 손실보상금) : 8,000천원 ○ 3개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운수회사 설립요건 등 설명 : '97.2.19 ○ '98 상반기 공영버스 손실 보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 13,000천원 • 지급금액 : 주내면 마전리 공영버스외 2개소 (운행 주체당 3,250천원씩 지급)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시내버스 편법 요금인상 시정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내버스의 좌석버스 전환 시정 대책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사항 인가시 우리군 의견 반영토록 협조공문 발송 : '95.3.5○ 협의 의뢰시 일체 협의불가 또는 주민의견 최대 반영 방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물가안정을 위한 업소단속 관행 시정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에 비협조적인 업소에 대한 단속부서를 통한 단속방법 개선 ○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인센티브제 도입 ○ 물가안정 및 단속을 위한 관련법 정비 		
조치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성이 적은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자율인하 유도 협조 의뢰(위생부서 및 관련부서 협조) ○ 가격 안정 모범업소 선정 「인센티브제」 실시로 가격인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명단 및 위치공개 :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활용 • 업주에 대한 정기표창 실시 : 2회(6월, 12월) •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부여 :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 과다 인상업소 명단 공개 :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활용 ○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함으로서 자율인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함 		

建 設 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부서	건설과
지적사항	○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97년부터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허술한 관리체계와 예산부족으로 성과가 미흡한 실정인 바, 향후 가로등 위치도 작성 및 등별 고유번호 부여, 고장신고 접수·처리부 비치, 야간 가로등 실태 현지확인, 신속한 수리체계 확립을 위한 보수업자 선정, 신설 및 고장수리시 A/S 체계 소요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가로등과 관련된 주민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추진상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및 보안등 일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97.12월~'98.2월 • 조사내용 : 각 읍·면의 리별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전수조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신고 및 수리대장 작성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 신고자, 보수내역, 고장 자재회수 표기 - 관리카드 작성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번호부여, 전주번호, 주민 관리자 기보수 내역 등을 조사 표기 - 관리총괄대장 작성 비치 : 리별 전체 등 내역 표기 -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 부착 완료 - 위치도 및 요도작성 비치 완료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예산액 : 64,800천원 • 신속 보수를 위해 한전 관할별로 2개 보수업체 지정하여 보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천·은현·남면 : 태성산업전기(주) - 주내·광적·백석·장흥 : (주)백경전기 ○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해당 읍·면별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보수는 군(郡)에서 일괄 보수할 계획임 • '99년도부터는 가로등(보안등) 보수 전담직원(3명)을 배치하고 보수용 차량을 구입하여(30,000천원) 보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수로원 수송방법 개선	소관부서	건설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로원의 현장투입 및 철수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덤프트럭이 이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조치 과정	<p><input type="checkbox"/> 추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로원 관리 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도 수로원 : 19명• 군(郡)도 수로원 : 1명○ 운영실태 : 정비조와 보수조로 구분하여 운영○ 수로원 수송방법 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 '97 행정사무감사이후 재무과 경리담당과 협의하여 승합차 또는 더블캡으로 현장투입 및 철수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공공사업 협의 불용자 등에 대한 조치

소관부서 건설과

지적사항

-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불용자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사업지연 및 중단 등의 원인이 되고 또한 협의가 지연되면 될 수록 당사자는 이익을 본다는 불건전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불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함.

조치결과

- 각종사업 추진에 있어 보상비가 총사업비의 30~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이 선행되어야 공사시행이 가능하므로 보상업무가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개인 재산권에 대한 주민의 권리의식이 커짐에 따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및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고자 가급적 상호 협의에 의한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이나 협의를 조건으로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더 베티면 더 이익”이라는 불건전한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 이에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협의취득 위주로 진행후 협의취득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취득 절차를 시작하는 현 방식에서 보상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의에 의한 취득과 토지수용법에 의한 취득절차를 병행함으로써 협의되지 않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 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진 및 배타적인 협의 거부 사례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추진실적

○ 1차 수용

- 신천 개수사업
 - 수용재결일 : '98.8.27
 - 수용대상물 및 수용재결 금액
 - 토지 : 28필지 15,449m² 727,315천원
 - 지장물 : 3건 607,621천원
 - 피수용자 : 서울시 상북구 수유5동 401-55호 고무식외 3인

조

○ 2차 수용

- 수용 재결일 : '98. 9. 21
- 수용 대상물 및 수용재결 금액
 - 토지 : 7필지 5,173m² 186,228천원
- 피수용자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82-15 이정행

치

가납광장 설치 및 접속도로 설치공사

○ 수용 재결일 : '98. 8. 27

- 수용 대상물 및 수용 재결금액
- 토지 : 1필지 239m² 30, 592천원
- 피수용자 :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513 홍청부

결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오산~연곡간 도로확·포장사업 착수방법 강구	소관부서	건 설 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연곡간 도로확·포장 사업 착수에 관해 수년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되어 왔으나 지연되고 있으므로 '98년 예산에 보상비로 계상된 3억 8천만원을 수정안을 통해 시설비로 전환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여 조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치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추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연곡간 도로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L=4.73km, B=10~20m • 소요사업비 : 9,1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투 자 : 1,924백만원(용지보상 85%) - '98 확보계획 : 1,638백만원(도비 1,338, 군비 300) - 향 후 : 5,538백만원 • '98.10.19 : 입찰공고('98.11.17 입찰예정) <p>※ '98년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하여 공사 추진계획</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건설기계 면허정지 및 취소 사전 안내	소관부서	건 설 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면허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와 같이 적성검사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줌으로써 적성검사 해태에 따른 불이익이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치 과정	<p><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안내계획 수립('98.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 대상자 : 적성검사후 5년이 경과된 모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 안내시기 : 분기별 1회(매분기초) ○ 안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성검사 신청장소 : 양주군청 건설과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급)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② 증명 또는 반명함판 사진 2매 • 적성검사 시기 : 적성검사후 5년 3개월내 • 적성검사 미신청시 법적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정기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2의 10호) -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정기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이내에 정기 적성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취소(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2의 10호) - 면허 효력정지 기간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에는 면허취소 및 100만원 이하 벌금부과(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2호 및 제42조 제10호) 		
파	<p><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분기('98. 3. 2) : 광적면 비암리 363 이천무외 16인 ○ 3/4분기('98.10.16) : 회천읍 덕정리 350 김병연외 23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부서	건 설 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관리에 있어 군(郡)에 수리예산을 일괄 확보하고 체결한 업자와의 고장 수리체계는 가로등이 예고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예산의 부족과 수리 시간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 신고접수·수리·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조치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및 보안등 일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97.12월 ~'98.2월 • 조사내용 : 각 읍·면의 리별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신고 및 수리대장 작성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 신고자, 보수내역, 고장 자재 회수 표기 - 관리카드 작성 비치 ☞ 관리번호 부여, 전수번호, 주민 관리자, 기 보수내역 등을 조사표기 - 관리 총괄대장 작성 비치 : 리별 전체 등내역 표기 -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 부착 완료 - 위치도 및 요도작성 비치 완료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예산액 : 64,800천원 • 신속 보수를 위해 한전 관할별로 2개 보수업체 지정하여 보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천·은현·남면 : 태성산업전기(주) - 주내·광적·백석·장흥 : (주)백경전기 ○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해당 읍·면별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보수는 군(郡)에서 일괄 보수할 계획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명예감독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소관부서	건설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예감독관 지정 및 활용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년도 계획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3.10~3.13일에 읍·면별로 사업설명회 및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명예감독관 위촉장 수여함.○ '9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98.3.10~3.13(4일간)• 장 소 : 각 읍·면 회의실• 대상사업 : 총 69건(군시행 23건, 읍·면 시행 46건)• 참석자 : 새마을남·녀지도자 254명• 설명회 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9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명예감독관 위촉장 수여- 사업설명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새마을사업편입토지처리를위한특별법 제정 건의	소관부서	건설과
지적사항	<p>○ 과거 새마을사업 추진관계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목변경, 등기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특례법 제정을 건의하기 바랍니다.</p>		
조치결과	<p>○ 새마을사업으로 시행 편입된 토지는 보상금 미지급으로 소유권 확보는 지난하여, 과거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소유권을 이전치 않으면서 분할 측량과 지목변경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p>		

都 市 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도시계획도로 등 체불용지 보상대책 강구	소관부서	도 시 파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중 미보상 토지를 비롯하여 그동안 군(郡)이 공공사업을 추진하고도 보상이 안된 체불용지가 상당수 있어 민원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현황을 전수 파악해 보고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조 직 지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구역내 체불용지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필지수</th><th>편입면적 (m²)</th><th>공시지가 평균액(원)</th><th>보상금 예상 소요액(천원)</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계</td><td>162</td><td>42,566</td><td>2,161,803</td><td></td><td></td></tr> <tr> <td>회천읍</td><td>20</td><td>2,764</td><td>163,230</td><td>451,184</td><td></td></tr> <tr> <td>남면</td><td>33</td><td>5,999</td><td>103,230</td><td>619,304</td><td></td></tr> <tr> <td>광적면</td><td>109</td><td>33,803</td><td>32,280</td><td>1,091,315</td><td></td></tr> </tbody> </table> <p>※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계획도로에 한해서 작성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실적 : '98년 예산에 체불용지 보상 소요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군(郡)재정 형편상 확보치 못하였음. ○ 보상계획 : 연차별 체불용지 보상계획에 의거 소요예산 확보시 보상실시 ○ 보상기간 : 1999년부터 10년간 계획 ○ 확보방안 : 막대한 소요액으로 년차별 계획에 의거 도비 및 군비 확보방안 강구 ○ 보상방법 : 소요예산 확보시 도시계획구역내 체불용지 소유자중 체불년도가 가장 오래된 필지를 우선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년차적 보상시 			구 분	필지수	편입면적 (m ²)	공시지가 평균액(원)	보상금 예상 소요액(천원)	비고	계	162	42,566	2,161,803			회천읍	20	2,764	163,230	451,184		남면	33	5,999	103,230	619,304		광적면	109	33,803	32,280	1,091,315	
구 분	필지수	편입면적 (m ²)	공시지가 평균액(원)	보상금 예상 소요액(천원)	비고																												
계	162	42,566	2,161,803																														
회천읍	20	2,764	163,230	451,184																													
남면	33	5,999	103,230	619,304																													
광적면	109	33,803	32,280	1,091,3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군사시설보호법등 지역개발 제한법규 완화 적극적 추진	소관부서	도시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도시계획법 등 지역개발 제한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법령의 완화를 위해 상급기관 등에 수차례에 걸쳐 서면 건의 등을 해 왔으나 그 방법이 소극적이어서 특별한 조치실적이 없는 실정이므로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해당부처나 군부대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조치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조치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양주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7개 사단급의 관할 부대가 있으며, 각종 행위허가시 군(軍)협의를 받아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나 협의기간이 장기화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기증되어 있어 '98.2.21일, '98.2.23일 군수 직접 방문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2.21 : 72사단, 65사단, 1군단 • '98.2.23 : 26사단, 28사단, 3군단 • '98.4. 7 : 국방부 및 관할 부대에 군협의 동의 건의건에 대하여 부군수 직접 방문하여 건의(7789부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장흥면 삼상리 일영역 주변의 탄약하화장에 대한 군협의 동의 건의 • '98.4.15 : 군수, 부군수 관할부대 실무자와의 협의(1군단, 72사, 1공병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광적면 비암리 군 훈련장 매수계획에 대한 주민 및 군입장 표명 • '98.8.20~9.20 : 일영 탄약하화장 구역내 수해건축물 복구에 따른 5회 방문 협의(부군수 → 51탄약대대, 3군수 지원사령부 합동 참모본부 등) ○ 주요 협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위임·해제 요청(관할 부대에서 검토중) • 각종 민원서류 협의기간 단축(기간내 협의 개선되었음.) • 건축 고도제한 협의(관할부대에서 검토중) • 수해건축물 이축 및 신축 협의 등(16동 협의 완료) ○ 추후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불리한 군사시설 경계 및 고도 제한높이 위임 등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허가 가능 여부 등 확인 가능토록 추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지도	소관부서	도 시 과
지 적 사 항	<p>○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주민의 피해의식과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고발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예방위주의 행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근거 하여 조치하시기 바람.</p>		
조 치 결 과	<p>○ 고발 등을 가급적 지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행위 사전예방 주력• 계고후 2차 계고 촉구까지 철거 기일을 충분히 부여• 불법 면적이 크거나 고질적인 재발생 외에는 가급적 고발을 자제하였음. (고발후 추진이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 <p>○ 철거시 관련법규 근거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계고후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 일자 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사전 영장발부후 철거하는 등• 철거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여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음.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78조, 건축법 제6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의거 조치하고 있음.		

住宅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제도 재정비	소관부서	주택과
지 적 사 항	○ 군(郡)이 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지원을 위한 "선용자 후담보" 계획을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농협측과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기 바람.		
□ 주택개량 융자금 지급업무 개선			
조 직 체 결 과	○ 농협측과 협의결과 융자금은 대지와 그외 토지를 담보 제공하여 대출금에 상당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후 행정기관의 공정 확인서에 의거 융자금액의 90%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토록 하겠으며, ○ 주택 완공시 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준공된 건축물로 담보물을 변경하여 10%에 해당하는 융자금액은 담보 취득후 지급 ○ 건물을 후취 담보로 취급할 경우에는 후취담보 제공 약정서를 작성후 융자금 지급토록 조치		

民防衛災難管理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민방위 재난관리태세 제정비	소관부서	민 방 위 재난관리과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화생방 장비(방독면 부족 및 보관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말 기준 민방위대원이 16,883명인데 개인 화생방 장비(방독면)가 부족하고 집단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유사시 대처 여부가 불투명 하므로 개인장비의 추가확보와 보관방법의 개선대책 검토 ○ 재난통신지원단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망 두절시 청내 아마추어 햄 회원들을 활용한 재난통신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검토 																																											
조 직 지 체 결 과	<p><input type="checkbox"/> 민방위대원 대비 개인 화생방 장비(방독면)가 부족 보급에 대한 추가 보급 방안</p> <p>○ 현재까지 방독면 보급내역</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계</th> <th colspan="5">년 도 별 보 급 내 역</th> </tr> <tr> <th>1986년</th> <th>1987년</th> <th>1988년</th> <th>1990년</th> <th>1998년</th> </tr> </thead> <tbody> <tr> <td>8,727</td> <td>1,266</td> <td>1,266</td> <td>1,266</td> <td>4,002</td> <td>928</td> </tr> </tbody> </table> <p>※ 1차 5개년 계획(1986년~1991년) 2차 5개년 계획(1992년~1996년) → 보급실적 전무</p> <p>○ 향후 보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3차 5개년(1998~2002) 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나 </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개/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총소요</th> <th>기확보</th> <th>계</th> <th>1998년</th> <th>1999년</th> <th>2000년</th> <th>2001년</th> <th>2002년</th> </tr> </thead> <tbody> <tr> <td>16,602</td> <td>7,799</td> <td>8,803</td> <td>2,000</td> <td>2,000</td> <td>2,000</td> <td>2,000</td> <td>803</td> </tr> <tr> <td></td> <td></td> <td>96,833</td> <td>22,000</td> <td>22,000</td> <td>22,000</td> <td>22,000</td> <td>8,833</td> </tr> </tbody> </table> <p>※ '98년 하반기 민방위 대원 16,602명 임.</p> <p>• 국가경제가 IMF 체제하가 되면서 '98년도 예산이 13,200천원(방독면 928개) 삭감</p>	계	년 도 별 보 급 내 역					1986년	1987년	1988년	1990년	1998년	8,727	1,266	1,266	1,266	4,002	928	총소요	기확보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6,602	7,799	8,803	2,000	2,000	2,000	2,000	803			96,833	22,000	22,000	22,000	22,000	8,833		
계	년 도 별 보 급 내 역																																											
	1986년	1987년	1988년	1990년	1998년																																							
8,727	1,266	1,266	1,266	4,002	928																																							
총소요	기확보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6,602	7,799	8,803	2,000	2,000	2,000	2,000	803																																					
		96,833	22,000	22,000	22,000	22,000	8,833																																					

- 따라서 향후 추가 소요되는 방독면 7,875개에 대해서는 3차 5개년 계획 기간중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 전량 구입하여 보급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조

□ 화생방 장비의 집단 보관으로 인한 유사시 대처방안

- 1986년~1988년도에 구입한 방독면 2,797개(자비부담)는 각 가정에 보관중이며,
- 1990년도 이후에 예산지원으로 구입한 4,930개만이 현재 각 읍·면에 통합 보관되고 있는 중임
- 1990년에 구입한 4,002개는 구입당시 리별 보관했었으나 분실, 도난으로 인해 '94년도 읍·면 통합 보관하고 있고,
- 유사시에는 전쟁발발 최소 경보시간이 24시간내에 탐지 가능하다는 원칙 하에 완벽한 분배계획 수립으로 현재처럼 읍·면에 통합 보관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치

□ 재난 통신지원단 구성 운영

결

- 재난통신지원단 발족 및 운영계획 수립 : '97.12.19

과

- 소요예산 확보 : '98년 본예산
- 예산액 : 8,000천원
 - 무선기지국 설치
- 무선기지국 설치 : '98.7월중
- 설치장소 : 재난종합상황실
 - 설치내역 : 베이스(광역기지국)
 - 소요예산 : 8,000천원
 - 재난주파수 : VHF144.6MHz

- 재난통신지원단 발족·운영 : '99년 2월중
- 대상자 : 양주군청 아마츄어 무선동우회 18명
 - 관내 거주자로 개인 무선국 개설자

保 健 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보건 의료사업 추진 개선

소관부서 보 건 소

- 지적사항
- 전염병 관리에 있어 유행성 출혈열, 독감 등 예방접종은 목표설정 및 실적관리가 무계획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 노인 건강생활 운동의 혈압 및 당뇨검사는 측정만 하고 이상자에 대한 처방이 없어 실효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기 바람.

- 조치
- 1998년 예방접종 목표는 대상자를 읍·면별로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구 분	목 표	실 적	비율(%)	비 고
일 본 뇌 염	8,400	8,800	105	
장 티 프 스	2,000	2,106	105	
유 행 성 출 혈 열	1,700	1,705	100	
독 감	11,060	10,960	99	

- 결과
-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 생활운동은 심각한 질병을 갖지 않고 정상노화 과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관절의 퇴축을 방지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혈관 질환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혈압, 당뇨검사는 노인운동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견된 고혈압, 당뇨환자 18명을 해당 보건지소에 등록의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진료를 실시하였음.

파

農業技術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배추 연작피해 예방사업과 투자효과 분석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추 연작 피해예방 시범사업 투자비가 0.6㏊에 11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작황에 따라 가격변동 폭이 큰 무, 배추 등 농작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예방사업을 자비로 추진할 경우 과연 투자효과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권장하기 바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무사마귀병 발생 상황(배추) 																																																
조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재배면적 (㏊)</th> <th colspan="4">발 생 정 도 별 (㏊)</th> </tr> <tr> <th>계</th> <th>10%이하</th> <th>11~30%</th> <th>31~60%</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15</td> <td>73(63%)</td> <td>23</td> <td>27</td> <td>19</td> </tr> <tr> <td>은 현</td> <td>35</td> <td>18(51%)</td> <td>9</td> <td>5</td> <td>3</td> </tr> <tr> <td>광 적</td> <td>80</td> <td>55(69%)</td> <td>13</td> <td>22</td> <td>16</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4</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3</td> </tr> </tbody> </table>			구 분	재배면적 (㏊)	발 생 정 도 별 (㏊)				계	10%이하	11~30%	31~60%	계	115	73(63%)	23	27	19	은 현	35	18(51%)	9	5	3	광 적	80	55(69%)	13	22	16						4						1						3
구 분	재배면적 (㏊)	발 생 정 도 별 (㏊)																																															
		계	10%이하	11~30%	31~60%																																												
계	115	73(63%)	23	27	19																																												
은 현	35	18(51%)	9	5	3																																												
광 적	80	55(69%)	13	22	16																																												
					4																																												
					1																																												
					3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이상 발병 포장 상품 출하 불가 ※ 재배면적중 연작에 의한 발병율이 6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조기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 예방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투자효과 분석 <input type="checkbox"/> 실증시험 결과 																																																
결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시 험 구</th> <th>대 비 구</th> <th>대 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병해발생정도(100포기당)</td> <td>7</td> <td>35</td> <td>-28</td> <td></td> </tr> <tr> <td>잡초방제(회수)</td> <td>0</td> <td>3</td> <td>-3</td> <td></td> </tr> <tr> <td>초 장(cm)</td> <td>43.3</td> <td>39.6</td> <td>3.7</td> <td></td> </tr> <tr> <td>엽 수((cm))</td> <td>22.7</td> <td>21.2</td> <td>1.5</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시 험 구	대 비 구	대 비	비 고	병해발생정도(100포기당)	7	35	-28		잡초방제(회수)	0	3	-3		초 장(cm)	43.3	39.6	3.7		엽 수((cm))	22.7	21.2	1.5																						
구 분	시 험 구	대 비 구	대 비	비 고																																													
병해발생정도(100포기당)	7	35	-28																																														
잡초방제(회수)	0	3	-3																																														
초 장(cm)	43.3	39.6	3.7																																														
엽 수((cm))	22.7	21.2	1.5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발생 정도는 대비구에 비해 80% 정도 발생이 줄었으며 잡초종자 발아억제에 의한 제초작업을 하지 않음 ※ 생육상황은 대비구에 비해 초장은 3.7cm가 크고 엽수는 1.5매가 많음. 																																																

○ 경제성 분석

(단위:kg 원)

구 분	생 산 량	조수 입	경 영 비	소 득
발 병 포 장	5,149	1,802	450	1,352
약 제 처 리 포 장	7,677	2,687	908	1,779

조

※ 발병포장 대비 2,528kg(49%)의 수확량이 증가하였으며,
소득은 427천원(32%)이 많음.

※ 농가반응 : 약제 및 관수시설에 의한 방제로 연작재배희망

치

○ 2~3회 연속 방제시 90%이상 병균밀도 감소로 정상적인 배추재배 가능

○ 약제처리 및 관수시설에 따른 투자비 과다 소요(458천원/10a/년)로
농가자체에 의한 방제는 어려움이 있어 행정지원 대책이 요구됨.

결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지역 농업센타 운영방법 개선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업개발센타가 농업인들의 현장 실험 실습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과정별로 과종에서 수확까지 이들을 직접 참여시켜 기술을 습득케 하고 실습장 운영인력 및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조 직 체 결	<p><input type="checkbox"/> 지역 농업개발센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영농 실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질병 진단실 : 23평 • 조직 배양실 : 29평 • 종합 검정실 : 35평 • 병해충 기본 예찰실 : 15평 ○ 농업인 교육 실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과학 실습실 : 64평 • 농기계 공작실 : 98평 ○ 작물실증 재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액재배(유리온실) : 64평 • 양액재배(비닐하우스) : 210평 ○ 우량 종묘 생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식망실 : 70평 • 조직배양 양묘 순화 온실 : 64평 		
과	<p><input type="checkbox"/> 운영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들에게 실험실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농업인 교육 실습실과 작물 실증 재배시설이 활용되고 있으며, 		

조

- 농업인 교육시설은 생활개선분야 자격취득 실기실습 교육 및 전통요리 실습, 홈페션 교육실습, 생활예절 교육과 농기계 정비 및 운전조작실습 등 농업인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고,
- 작물실증 재배시설은 각종 작물의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실증 재배실로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일부 재배작업 과정은 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정밀성, 숙련성을 요하는 작업 등 전 재배 과정을 실습을 통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 영농 4-H회원, 농업인 품목별 조직체 교육시 작업시기와 일치된 실습 가능한 작업을 연계하여 인력 및 경영비 절감을 실행코자 함.

치

결

과

文化觀光事業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문예회관 시설 보완	소관부서	문화관광사업소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바닥 잔디보완 재검토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야외공연장의 규모는 전체 바닥면적의 150평에 600명이 관람할 수 있으며 우리군 명물인 양주별산대 놀이, 소놀이굿 등 여러 야외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현재 무대바닥 이용시 재료 및 구조상 뚜렷한 문제가 없어 공연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잔디 보완건은 바닥의 기초부분이 두께 10cm의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어 재시공이 어려운 구조물이며 잔디보완에 필요한 소요비용 1,3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 또는 보수시공이 필요한 시점에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으며,○ 문예회관 시설 이용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운영토록 하겠음.		

上・下 水 道 事 業 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계획 제검토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민협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지하수를 공급하도록 계획된 바, 사후 지하수 고갈에 따른 물량 부족시의 대책과 수원지 주변 주민의 피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양민협이 추진하고 있는 수원개발을 농진공 등에 의뢰하고, 배수지를 따로 설치하거나 5단계 물량을 관내 전지역으로의 온라인화 하는 사업을 착수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급수계획을 검토해 주기 바람.		
조치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민협”에서 개발키로 한 지하수 개발물량의 확보가 어렵고 지하수 개발시 인근 주민에 의한 민원발생이 예상됨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지하수의 확보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동주택 배정물량중 착공 지역으로 인한 여유 물량 일 2,414톤을 “양민협”에서 원인자 부담금 1,267,515천원, 배수관로 사업비 475,000천원 등 총 1,742,515천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수도 공급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급키로 하였으며,○ 배수관로 사업의 경우 '98.10.12일 착공하여 '98년 12월말까지 준공코자 추진중에 있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시행시 관내 전 급수지역은 온라인 system으로 추진할 예정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상수도 급수제한공고 해제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시까지 상수도 급수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동두천시 공급물량의 확대와 기배정 물량중 여유분이 늘어남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이 해소되고 있으니 제한사항을 즉시 해제하여 주기 바람.		
조치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3.13일자(양주군 공고1997-75) 공동주택을 포함한 5톤/일이상 다량사용 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을 제한하였으나○ 동두천시로부터 수수물량 추가 확보와 시설개량으로 공급량이 증가되어 '97.12.5일(양주군 공고1997-441)자로 수돗물 공급제한을 해제하였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신천개수 구간내 차집관로 시설방법 전환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사업이 마무리된 신천개수 구간내에 뒤이어 차집관로를 매설하므로 예산을 낭비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 과정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차집관로 매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계 : 48.3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28.3km, 2단계 : 20km ○ 추진실태(추진부서 및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개수 : 건설과 하천계, 도비(전액) • 하천정화 : 환경보호과(건설과 하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여금(55%), 도비(22.5%), 군비(22.5%) • 차집관로 : 동두천시(양주군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여금(53%), 도비(23.5%), 시·군비(23.5%) ○ 추진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로 추진부서 및 재원이 상이하여 사업시기가 일치되지 않아 예산낭비 및 민원 야기 ○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시에서 일괄 발주중인 차집관로 설치 계획을 하천개수 시기와 일치시켜 병행 시공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에 요청('98.1.15)중에 있으며 특히 2차 차집시설도 차집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일괄 시공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와 협의하여 시공코자 함. 		

衛 生 環 境 事 業 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완벽한 탈취시설 보완	소관부서	위생환경사업소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혐오시설 주변 주민들은 시설이 소재한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날씨가 흐리고 저기압 때에는 냄새가 심해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는 바, 저기압 상태에서는 완벽한 탈취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시설을 연구하여 도비 등 지원을 받아 조속한 시일내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악취 발생에 대한 억제 계획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발생 요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뇨투입시 전처리 시설물 및 배관설비 노후• 탈취장치 및 소각장치 굴뚝 높이가 낮아 저기압시 냄새가 아래로 내려옴• 협잡물 처리시 콘베아밸트로 소각실 이송중 분뇨성분의 수분이 외부바닥에 노출• 투입차량이 투입중 탱크 내부의 Air 제거를 투입실에서 실시할때○ 악취제거 조치결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된 전처리 시설물 및 배관설비 교체 완료• 소각장치 교체 및 탈취장치 이설 완료• 소각장치 및 탈취장치 굴뚝높이 상향 조정 완료• 협잡물 이송용 밸트콘베아 교체 완료• 투입실 외부공간 차단 자동샷다문 설치 및 내부에서 차량 Air 처리금지 완료○ 악취제거 시설보수 및 세부 추진상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뇨처리시설 증설 공사중 전처리 시설물 및 배관설비 교체 완료 (준공 : '98.8.7)• 분뇨처리시설 보완공사중 탈취장치 이설, 굴뚝높이 상향조정, 소각장비 교체, 협잡물 이송 콘베아 교체, 투입실 자동샷다문 설치 등 완료 (준공 : '98.8.7)		

○ 기타 추진계획

- 전처리 장치, 소각장치, 탈취장, 배트콘베아 등 기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로 냄새 발생 억제, 투입차량의 Air 처리 및 오물투기가 이루어워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 추진중

조

치

결

과

檜 泉 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소관부서	회천읍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수, 기타 용도로 개발 사용중이던 관정이 폐공되면 즉시 군(郡)에 보고하고, 예산지원을 받아 복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관정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72공(소형 : 289공, 대형 83공)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문제점<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및 수원 고갈로 방치되는 관정으로 인하여 지하수원의 오염이 심각하고○ 날로 늘어나는 지하수 개발로 인한 향후 지하수원의 고갈이 우려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대책<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이용중인 관정에 대하여 노후 및 수원고갈로 방치된 관정의 지속적인 조사와 리장 회의시 폐공방지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켜 각 리에 방치된 관정을 발견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 관리	소관부서	회 천 읍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부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응소자 출석 관리는 실제 응소자만을 출석 처리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 실시전에 체계적인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1주일 동안 마을방송, 유선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알수 있도록 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 연립 등의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여 놓고 홍보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응소율을 높이고 있음. <p style="margin-top: 10px;">※ '98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편성인원</th> <th>응 소 자</th> <th>불 참 자</th> <th>응 소 율</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5,526</td> <td>5,404</td> <td>122</td> <td>97.8%</td> <td rowspan="4">불참자는 말소처리</td> </tr> <tr> <td>기본비상</td> <td>5,526</td> <td>3,357</td> <td>2,169</td> <td>60.8%</td> </tr> <tr> <td>1차 보충</td> <td>2,169</td> <td>1,776</td> <td>393</td> <td>81.8%</td> </tr> <tr> <td>2차 보충</td> <td>393</td> <td>271</td> <td>122</td> <td>70%</td> </tr> </tbody> </table>	구 분	편성인원	응 소 자	불 참 자	응 소 율	비 고	계	5,526	5,404	122	97.8%	불참자는 말소처리	기본비상	5,526	3,357	2,169	60.8%	1차 보충	2,169	1,776	393	81.8%	2차 보충	393	271	122	70%		
구 분	편성인원	응 소 자	불 참 자	응 소 율	비 고																									
계	5,526	5,404	122	97.8%	불참자는 말소처리																									
기본비상	5,526	3,357	2,169	60.8%																										
1차 보충	2,169	1,776	393	81.8%																										
2차 보충	393	271	122	70%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소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도 불응하는 자는 과중한 과태료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통지, 3차 보충교육에는 전원 응소하게 하고 보충훈련에도 불응하는 자에게는 관련법규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고발이나 벌금형으로 정하여 민방위대원에게 비상훈련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게끔 건의사항 제출 (관련공문 사본 별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부서	회 천 읍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관리에 있어 군(郡)에 수리예산을 일괄 확보하고 체결한 업자와의 고장 수리체계는 가로등이 예고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예산의 부족과 수리시간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신고 접수, 수리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조치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천읍 총 등수 : 825등(가로등 117등, 보안등 708등)•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등수 : 약 80등(군청 50등, 읍 30등)• 매년 고장 등수 : 약 650등(78%)• 소요 수리비 : 650등 × 50천원 = 32,500천원○ 문제점<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고장 수리업체가 관내가 아닌 의정부시 소재 1개업체로 한정되어 7개 읍·면의 고장난 보안·가로등을 신속하게 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대책<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장수리 업체를 양주군 관내에 있는 유능하고 실속있는 제2, 제3 업체를 선정하여 고장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법 개선	소관부서	회 천 읍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서상의 법적 근거조항 표시가 오기이고,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후 봉인된 뒷편 번호판을 근거로 재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체납자의 분실 신고시 관허사업 제한의 방법에 따라 체납세 납부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시 영치사실 통보서상의 행정처분 법적 근거조항 표시가 오기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적법한 근거조항(지방세법 제196조의 12)을 적용 영치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번호판 분실 신고후 재 제작하여 부착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시 영치 번호판의 목록을 작성하여 지역 경제과 및 양주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에 작성목록을 통보하여 번호판 분실 이 아닌 체납에 의한 번호판 영치임을 알려주어 재 제작하여 부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음.		
결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소관부서	회 천 육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토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관습임.○ 사후에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 또는 합장코자 하는 경우 과거 매장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야·전 등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과거의 행위가 우리사회의 관습에 의했던 것임을 감안 인우보증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등 필요한 방법을 고안해 이장·매장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묘지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때 매장신고 지연 사유서와 함께 매장신고를 한 후, 합법 묘지로 이장하는 조건하에 개장 신고증을 발부하고 있음.		

州 内 面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소관부서	주 내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수, 기타 용도로 개발 사용중이던 관정이 폐공되면 즉시 군(郡)에 보고하고, 예산지원을 받아 복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관정 개발중 지하수 부족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폐공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에게 자진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97년도 폐공 조사 및 지하수 개발시 폐공된 관정은 없으며,○ 또한, 면정회보를 통하여 방치된 폐공에 대하여 신고 및 홍보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무단방치된 폐공에 대하여는 군(郡)에 폐공조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여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염정 관리	소관부서	주 내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교육 훈련 실적중 비상훈련 소집 응소율이 매우 저조하니, 향후에는 응소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비상훈련 교육 소집시 많은 대원이 응소토록 조치하기 바람. 		
조 직 자 체 결 과	<p><input type="checkbox"/> 민방위대 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자원 관련 공부의 전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연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편성자원의 교육훈련, 전·출입 상황 등 정리 다만, 수감자, 주민등록 말소자 별도 편성 관리하여 누락자 방지 • 편성 제외자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첨부, 신규별로 구분 작성하여 민방위 협의회의 엄격한 심사 • 대원 전·출입 대장 : 편성자원의 전·출입 사항 정확히 기록 • 개인별 주민등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 교육·훈련상황, 편성제외 사유 등 기록 확인 다만, 교육 훈련상황은 전출시 기록 송부하여 철저한 교육 실시 • 통·리대원 연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리별로 월 1회이상 연명부 대조 확인하여 대원 변동사항을 즉시 정리하여 민방위대장과 협조 강화 <p><input type="checkbox"/> 자원정비의 날 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의 날 : 매월 첫째주 월요일 ○ 운영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장님 회의때 통지대원 연명부와 대조 실시 • 관련 공부와 대조 누락, 미삭제 여부 확인 • 대원 변동사항 통보 이행여부 확인 		

- 일일결산 확행 및 확인 지도
 매일 일과 종료시에 정리(대장관리 철저)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

- 조
 소속 기관장 및 지역 민방위 대장의 국가 안보의식 및 사명감 고취
 상·하반기 기본교육 및 신규 편성자 교육 화생방 분대원 교육시
 소양강의를 내실있고 효율성 있게 강사진을 배정
 민방위 대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홍보
 민방위 대원의 임무고지 철저

민방위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치
 기본교육 불참시 보충교육에 참석토록 개인별로 전화 독려
 불이행시 민방위기본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97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결과

- 결
 총 대원 수 : 2,236명
 응소 대상자 : 2,236명
 응 소 인 원 : 2,024명(응소율 : 99.46%)
 미 응 소 자 : 12명(말소자)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부서	주 내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관리에 있어 군(郡)에 수리예산을 일괄 확보하고 체결한 업자와의 고장 수리체계는 가로등이 예고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예산의 부족과 수리시간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신고 접수, 수리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고는 주민이 신고 또는 우리면에서 출장시 고장난 가로등에 대하여는 접수하여 군(郡)에 보고후 수리하고 있으나○ 군내 수리업체는 1개소로 7개 읍·면을 순회하여 수리하고 있어 고장시 보수 지연으로 인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98년도부터는 보수업체를 추가 선정하여 가로등 고장이 신속히 보수되도록 할 계획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법 개선	소관부서	주내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서상의 법적 근거조항 표시가 오기이고,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후 봉인된 뒷편 번호판을 근거로 재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 체납자의 분실 신고시 관허사업 제한의 방법에 따라 체납세 납부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조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시 영치사실 통보서상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인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영치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한 후 관허사업 재발급이 가능토록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철저히 이행. ○ 또한, 번호판을 영치당한 일부 체납자들이 영치된 번호판이 봉인되지 않은 앞 번호판이란 점을 악용하여 분실 신고후 재 제작하는 사례가 있기에 이러한 사항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번호판을 영치할시 영치당일 자동차 번호판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지역경제과 양주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에 즉시 통보하여 체납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시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p>자동차세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 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p> 		

No. _____

영 치 증

○ 자동차 등록번호 :

○ 성 명 :

○ 주 소 :

1. 위 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표(자동차 등록증)을 세무공무원이 영치하였습니다.
2. 이 영치증을 세무공무원의 허가없이 임의로 손상 및 은닉한 자는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자동차세의 납부영수증 또는 비과세 증명과 본 영치증을 양주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시하면 즉시 상기 제1항의 조치를 해제합니다.
4. 이 영치증에 의한 자동차 운행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영치일시 : 19 년 월 일 시 분

○ 영치장소 :

○ 단속 공무원 : 소속 성명 ☺

* 연락처 : 양주군 재무과 ☎ 820-2191~2192 또는 읍·면 재무계

양 주 군 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소관부서	주 내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토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관습임.○ 사후에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 또는 합장코자 하는 경우 과거 매장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야·전 등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과거의 행위가 우리사회의 관습에 의했던 것임을 감안 인우보증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등 필요한 방법을 고안해 이장·매장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기 바람.		
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 처리되는 실정이며 법규 개정 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이며, 법 개정으로 인한 사회제도 및 관습 변화가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음.		
결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소관부서	주 내 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B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주민의 피해의식과 불법사항을 고려하여 고발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예방위주의 행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조치하기 바람. 		
조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B 지역 : 유양 1·2리, 어둔리, 난방 1·2·3·4리, 마전 1·2리, 광사 1·2리, 만송 1리 • G·B 면적 : 27.60km²(전체면적의 66%)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단속원(청원경찰) 4명이 1일 2회 이상 순찰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을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은 관련법규의 무지로 불법행위를 하여 고발 및 강제 철거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결과			

隱 縣 面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소관부서	온 현 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수, 기타 용도로 개발 사용중이던 관정이 폐공되면 즉시 군(郡)에 보고하고, 예산지원을 받아 복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정관리 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 32개소중<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 30개소- 정비대상 : 2개소○ 관정정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 2개소(소재지 : 선암리 204, 220-1)• 실적 : 2개소(100%)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 관리	소관부서	은 현 면
지 적 사 항	<p>○ '98년부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응소자 출석 관리는 실제 응소자만을 출석 처리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기 바람.</p>		
조 직 체 계 결 과	<p>○ '98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마을별 비상소집 공고문 게재 : 13개소• 관내 유선방송 실시 : 10회•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 : 5회• 차량을 이용한 가두 방송 실시 : 2회 <p>○ '98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시 교육 및 실질 훈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청 계장급 및 리 민방위대장을 통한 강의 실시• 응급 처치 및 재난대비 훈련 실시 <p>○ 민방위 비상소집 불참자 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자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하고 1·2차 보충교육 불참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확행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부서	온 현 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관리에 있어 군(郡)에 수리예산을 일괄 확보하고 체결한 업자와의 고장 수리체계는 가로등이 예고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예산의 부족과 수리시간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신고 접수, 수리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 가로등 : 21개소(군(郡) 관리) • 보안등 : 261개소(읍·면 관리) ○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신고 접수대장 비치 : 산업계 • 고장신고 접수후 백경전기에 신속하게 직접 연락하여 보수후 보수대장에 처리사항 기재 • 가로등 표찰 붙이기 및 요도작성된 관리카드 대장으로 사후관리 철저 ○ 고장 가로등 조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 가로등 : 3개소 • 보안등 보수 : 77개소 		
결과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법 개선	소관부서	온 현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서상의 법적 근거조항 표시가 오기이고,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후 봉인된 뒷편 번호판을 근거로 재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체납자의 분실 신고시 관허사업 제한의 방법에 따라 체납세 납부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조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46조의 12 제②항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시 그 사실을 자동차세 등록 번호표 영치증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발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번호판을 영치한 후에는 자동차 등록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차세 번호판 재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할 경우 번호판이 재교부되는 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소관부서	은 현 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토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관습임.○ 사후에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 또는 합장코자 하는 경우 과거 매장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야·전 등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과거의 행위가 우리사회의 관습에 의했던 것임을 감안 인우보증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등 필요한 방법을 고안해 이장·매장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불법으로 설치된 묘지를 연고자가 이장코자 할 때에는 매(화)장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음. ※ 시체 매(화)장 신고 → 읍·면(처리기간 : 즉시)		
파			

南

面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수, 기타 용도로 개발 사용중이던 관정이 폐공되면 즉시 군(郡)에 보고하고, 예산지원을 받아 복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람.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정 일제조사 및 정비대상 관정 일제조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97.12.2 일제조사 : 정비대상 없음○ 향후 추진계획<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공 발생즉시 신고체계 확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장을 통한 주민 홍보 및 관정 관리자에 안내문 송부• 신고즉시 현지조사후 군(郡) 건설과에 조치 의뢰		
결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 관리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부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응소자 출석 관리는 실제 응소자만을 출석 처리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상반기 비상소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인원 : 1,505명 • 응소인원 : 1,503명 • 미 응 소 : 2명 ○ 미응소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비상 보충교육 통지서 교부 •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명 • 통지서 교부 불능자 주민등록 말소 추진 : 29명 • 말소진행중 거주확인자(18명) 추가 비상 보충교육 실시 : 2회 실시 ○ 엄정한 응소자 관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결장소 면사무소 지정 • 군, 리담당, 지역민방위대장 3명의 참여로 미응소자 응소기록부에 등재 방지 ○ 민방위 비상훈련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정회보, 마을방송, 공고문 게첨 실시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부서	남 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관리에 있어 군(郡)에 수리예산을 일괄 확보하고 체결한 업자와의 고장 수리체계는 가로등이 예고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예산의 부족과 수리시간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신고 접수, 수리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조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보안등 일제 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1월중(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등 관리자 지정(정 : 각 리장, 부 : 보안등이 위치한 인근 거주자) - 위치도면 작성, 사진 부착 등 관리대장 작성 관리 ○ 고장신고 접수체계 확립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편의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 태성전기(인접업체 : 신속수리)로 직접 신고 및 주민 → 산업계 → 태성전기 신고 등 병행 활용 • 수리후 관리대장 작성 등 지속적 관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법 개선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서상의 법적 근거조항 표시가 오기이고,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후 봉인된 뒷편 번호판을 근거로 재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 체납자의 분실 신고시 관허사업 제한의 방법에 따라 체납세 납부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조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영치증의 관련근거가 정확하고, 반드시 비봉인 번호판인 앞 번호판 만을 영치하고 있으며, ○ 영치 즉시 교통행정계 및 번호판 제작소와 경찰관서에 번호판 재제작 금지를 의뢰하는 협조공문 발송 ○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세금의 징수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개인별 또는, 면정회보 및 관내 유선방송을 통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어야 할 것임. 		
결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소관부서	남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토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관습임.○ 사후에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 또는 합장코자 하는 경우 과거 매장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야·전 등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과거의 행위가 우리사회의 관습에 의했던 것임을 감안 인우보증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등 필요한 방법을 고안해 이장·매장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기 바람.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불법으로 설치된 묘지라 하더라도 이장하고자 하는 장소가 묘지설치 허가를 득한 장소(공원묘지, 공동묘지, 사설 허가된 묘지 등)일 경우, 매장(개장)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음. ('98년 2기 접수 처리)○ 시체 매(화)장 신고는 상기와 같이 묘지설치 허가를 득한 장소에 한해서만 접수, 처리하고 있음.		

廣 積 面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소관부서	광적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 기타 용도로 개발 사용중이던 관정이 폐공되면 즉시 군(郡)에 보고하고, 예산지원을 받아 복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람. 		
조치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소형 관정이 건설과 관리담당(지하수 개발) 및 농림축산과 기반조성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굴착 등으로 인하여 관정의 관리 미흡 • 신고대상 대형관정 : 32공('98.10월 현재) ○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12.10 : 대형관정 15공 폐공 조치 • 이장회의시('98.10.12) 폐공 현황 제출(1차 조사중) ○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폐공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발생을 인식시켜 폐공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 관리	소관부서	광적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부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응소자 출석 관리는 실제 응소자만을 출석 처리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기 바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계획수립을 통한 응소율 확대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정회보 게재, 각 리 마을앰프 활용, 다중 이용시설물 및 공공 건물(농협, 신협, 은행,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각 리 마을회관) 공고문 게시 : 20개소 게첨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응소자 출석 확인을 위한 리별 담당자 사전교육을 통한 응소자철저 확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2.16 각 리별 담당자 교육실시 : 교육인원 12명 - 비상소집 훈련 대상인원 : 1,974명 - 비상소집 훈련 참석인원 : 1,653명 참석(83.7%)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응소자에 대한 현지 방문 확인으로 사실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 조치를 알리고 연락 가능한 자 사전 홍보를 통해 훈련에 전원 응소도록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보충교육 대상자 335명(전입자 14명 포함) 통지서 교부후 연락가능한 자 257명에 대하여 전화 독려(기간 : '98.2.20~2.27) • 1차 보충교육 인원 : 335명, 응소인원 291명 • 2차 보충교육 대상자 44명에 대하여 전화독려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고지 • 2차 보충소집 훈련 참석자 : 36명 • '98.3.31일 무단 전·출입자 4명 말소 조치 ※ 불참인원 : 8명(해외출국 1명, 환자 1명, 편성제외 1명, 사망 1명 주민등록말소자 4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부서	광적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관리에 있어 군(郡)에 수리예산을 일괄 확보하고 체결한 업자와의 고장 수리체계는 가로등이 예고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예산의 부족과 수리시간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신고 접수, 수리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조치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적면 총 보안등수 : 369등 ○ 1998년도 신규 보안 등 설치등수 : 30등 ○ 1998년 고장 등수 : 95개('98.10월 현재) ○ 예상 수리비 : 95등 × 45천원 = 4,275천원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양주군 고장수리업체가 2개 업체로 한정 운영되어 3~4개 읍·면의 보안등 및 가로등의 신속 수리가 불가능 한 실정임. <p><input type="checkbox"/>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읍·면 가로등·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양주군내에 전담 보수반을 신설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법 개선	소관부서	광적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서상의 법적 근거조항 표시가 오기이고,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후 봉인된 뒷편 번호판을 근거로 재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 체납자의 분실 신고시 관허사업 제한의 방법에 따라 체납세 납부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 법적 근거조항 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하여 번호판 영치증에 표기된 법적 근거 조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규정에 의하고 있으므로 오기표기가 아님. <p><input type="checkbox"/> 체납자 번호판 분실 신고시 제한방법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회수한 자동차 번호판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지역경제과, 양주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에 통보하고 ○ 분설 신고에 따른 재제작 의뢰자에 대하여는 체납과 관련하여 재무부서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협조 의뢰 ※ 군(郡) 재무13410~451('98.2.17)호로 담당부서 및 번호판 제작업소에 협조의뢰 완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소관부서	광적면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토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관습임.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에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 또는 합장코자 하는 경우 과거 매장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야·전 등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과거의 행위가 우리사회의 관습에 의했던 것임을 감안 인우보증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등 필요한 방법을 고안해 이장·매장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기 바람.		
사			
항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소유의 토지(전·임야 등)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 단 1기의 묘(최소한 20m²)라도 농지전용신고 또는 임야 훼손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으로 불법묘지 발생 최소화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조성되어 있는 묘지중 매장신고를 필하지 않은 묘지를 공원묘지 등 적법한 묘지로 이장할 경우 신고인과 망자(亡者)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 등본이나, 인우보증 등을 통한 사실확인 후 매장이 가능 토록 하여 기존의 불법(미신고) 묘지 점차적 해소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신고 묘지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위 방법으로 신고 기간내에 조치토록 제도하여 향후 모든 묘지가 합법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의 묘지에 대해서는 불법 묘지로 간주 행정처벌을 강화토록 함.		
과	<p>※ 위 사항은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개정이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 제정에 의해서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시행이 우선되어야 함.</p>		

白 石 面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수, 기타 용도로 개발 사용중이던 관정이 폐공되면 즉시 군(郡)에 보고하고, 예산지원을 받아 복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관정 개발시 지하수 부족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폐공에 대하여 면정회보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로 방치된 폐공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자진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으며,○ 농번기 이전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폐공관정 현황 파악후 무단방치된 폐공에 대하여는 군(郡)에 사업비 지원 요청하여 지하수 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결과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 관리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년부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응소자 출석 관리는 실제 응소자만을 출석 처리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기 바람.		
조치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 비상소집 훈련 대상은 2,050명, 응소자 2,036명(1차 1,665, 2차 333, 3차 38)으로 불참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방문후 주민등록 말소조치 및 편성 제외 대상자 확인 조치 등 민방위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 리별 민방위대 조직강화를 위하여 비상연락망 재정비 및 민방위 정기 교육시 훈련의 중요성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확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관리에 있어 군(郡)에 수리예산을 일괄 확보하고 체결한 업자와의 고장 수리체계는 가로등이 예고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예산의 부족과 수리시간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신고 접수, 수리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 산업계에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접수즉시 수리업체에 연락 신속하게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가로등 현황을 철저히 하여 관리카드 및 요도작성 관리토록 하겠으며, 가로등 위치별 관리 및 신고요원을 위촉하여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법 개선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서상의 법적 근거조항 표시가 오기이고,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후 봉인된 뒷편 번호판을 근거로 재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 체납자의 분실 신고시 관허사업 제한의 방법에 따라 체납세 납부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번호판 영치 실적은 총 29건으로 15,970천원의 체납을 수거 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그 영치사실을 지방세법 제146조의 12 제2항에 의거 체납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있으며, ○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 양주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에 통보하여 영치차량 확인 여부를 협조 의뢰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소관부서	백석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토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관습임.○ 사후에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 또는 합장코자 하는 경우 과거 매장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야·전 등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과거의 행위가 우리사회의 관습에 의했던 것임을 감안 인우보증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등 필요한 방법을 고안해 이장·매장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기 바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묘지의 연고자가 이장하여 적법한 묘지로 매장 또는 화장을 하고자 할 경우 사망자와 인적사항과 묘지에 매장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즉시 민원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인묘지 등은 신고없이 매장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묘지조성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화장 및 가족납골묘 등을 권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임.		
결과			

長興面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 기타 용도로 개발 사용중이던 관정이 폐공되면 즉시 군(郡)에 보고하고, 예산지원을 받아 복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람. 		
조 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도중에 폐공과 관련하여 실태 조사한 결과 폐공으로 확인된 관정이 2개소로서 현재 2개공 모두 폐쇄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관내에 설치된 관정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를 조사하여 폐공으로 확인될시 폐쇄 조치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의 사전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하수의 개발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및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면의 (군수 신고) 지하수 개발은 대부분이 지하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으로서 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임. ○ 장흥면의 '97년도 지하수 개발은 19공이며 '97년도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결과 이용이 중단되어 폐공으로 확인된 곳이 2공으로서 2개공 모두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폐쇄조치 완료하였으며, ○ 앞으로도 개발된 지하관정에 대하여는 수시로 실태를 조사하여 폐공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지하수법의 기준대로 폐쇄조치 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 관리	소관부서	장 흥 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년부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응소자 출석 관리는 실제 응소자만을 출석 처리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기 바람.		
조치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시 마을방송, 벽보 게첨 등으로 사전에 응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비상소집 훈련 결과 총 1,037명중 712명이 응소하여 68.5%의 참석율을 나타냈으며,○ 불참자 325명에 대하여는 2차에 걸친 보충훈련을 실시하여 323명이 응소하였고, 2차에 걸친 보충훈련 불참자 2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하였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관리에 있어 군(郡)에 수리 예산을 일괄 확보하고 체결한 업자와의 고장 수리 체계는 가로등이 예고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예산의 부족과 수리시간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신고 접수, 수리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조 직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도중에 관내 가로등에 대하여 35개소 신설, 79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가로등(보안등) 450여 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위치·번호 및 수리내역 등을 기재 관리하고 있는 바, 현재 가로등을 군(郡)에서 일괄 관리하고 1개업체가 보수를 함에 따라 가로등의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 지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 가로등 관리는 자연부락 및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을 고장 및 파손시 신속한 보수에 임하고자 도로 기능별로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분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 기위 관내 476개 가로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등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치, 가로등 고유번호, 고장 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리담당 공무원 및 주민의 고장신고시 즉시 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으나 보수 용역업체의 일손 부족에 따른 기동성 저하로 적기 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바, ○ '98년도부터는 양주군 7개읍·면에 대해 2개업체가 지역을 나누어 보수토록 관리방법을 변경함으로서 고장 신고에서부터 수리까지의 시간이 다소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는 가로등의 보수 관리는 군(郡)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법 개선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서상의 법적 근거조항 표시가 오기이고,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후 봉인된 뒷편 번호판을 근거로 재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 체납자의 분실 신고시 관허사업 제한의 방법에 따라 체납세 납부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와 함께 지방세법 제196조 12의 규정에 의거 번호판 영치할 시에는 영치당일 회수된 번호판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양주군 번호판 제작소, 관할 경찰서)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실질적인 체납세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할 것이며, ○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허사업(인·허가, 면허 등록 등)이 제한됨을 체납자에게 주지시키고 체납세 납부후 번호판 재발급이 가능함을 각종 회의 및 면정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결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묘지관리 제도개선 건의	소관부서	장 흥 면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토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관습임.○ 사후에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 또는 합장코자 하는 경우 과거 매장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야·전 등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과거의 행위가 우리사회의 관습에 의했던 것임을 감안 인우보증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등 필요한 방법을 고안해 이장·매장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기 바람.		
조 직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야·전 등에 설치된 불법 묘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묘지관계법령 및 질의 응답집(1996년 경기도 발간) p.191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장신고 절차로 매장신고까지 준하되 매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장의 확인서와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및 사망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시 이장 및 매장이 가능하므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불법 분묘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소관부서	장 흥 면
지적사항	<p>○ G·B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주민의 피해의식과 불법사항을 고려하여 고발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예방위주의 행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조치하기 바람.</p>		
조치결과	<p>○ 현재 우리면의 G·B 구역 관리에 있어 담당직원(청원경찰)이 담당부락을 1일 2회 순찰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한편, 관련 법규상 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p> <p>○ 불법사항 발생시에는 2회에 걸쳐 자진 원상복구토록 촉구하고 불응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바,</p> <p>○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순찰 활동을 실시함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철거에 다른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 하겠음.</p> <p>○ 현재 장흥면의 G·B 지역 관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및 '97 대통령 선거 이후 G·B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의 증가로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B 지역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과의 공동 감시활동을 위하여 불법행위신고센타의 설치 운영과• 감사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구역을 지정 책임 관리토록 함과 동시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대집행 확행으로 엄정한 법질서 의지를 확산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 계고서 발송전 면담 및 대화를 통하여 관련 행위의 위법성을 주지시켜 사전 원상복구토록 하고 불응시 2회에 걸쳐 계고후 불법사항의 정도에 따라 고발 및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

- 불가피하게 고발 및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 충분한 이해 설득으로 피해의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G·B 지역에 대한 관리는 당해 주민의 피해의식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홍보와 예방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음.

치

결

과